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관의 장

시 G 보

제12호 2024. 3. 20.(수)

규 칙

광양시 규칙 제928호	광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1
광양시 규칙 제929호	광양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3
광양시 규칙 제930호	광양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6

고 시

광양시 고시 제2024-90호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29
광양시 고시 제2024-92호	광양시 도로구간(1차 종속도로) 설정 고시 31
광양시 고시 제2024-93호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폐지 고시 33
광양시 고시 제2024-94호	광양시 도시관리계획(공원 제1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정정 및 변경 고시 34

공 고

광양시 공고 제2024-716호	도로지정공고 39
광양시 공고 제2024-723호	저곡소하천 정비 시행계획(변경)의 공고 41
광양시 공고 제2024-737호	「쌍의사 도로 정비 및 주차장 조성사업」 보상계획(열람) 공고 57
광양시 공고 제2024-738호	광양시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61

회 람										
--------	--	--	--	--	--	--	--	--	--	--

광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0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규칙 제928호

붙 임 : 광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광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

광양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2제3호 중 “전가”를 “전가(轉嫁)”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제19조의2제5호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을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제21조를 삭제한다.

제22조제3항제2호 중 “별표 1의”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으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별표 2”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신고하여야 한다.”를 “서면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해야 한다.”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삭제한다.

별지 제3호 서식부터 제9호 서식까지, 별지 제15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반행위에 대한 징계 등 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
전의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제21조 및 제25조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종
전의 규정에 따라 제29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u>제5조(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①</u> <u>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해당 사실을 별지 제3호 서식(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시장이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1. 공무원 자신이 직무관련자인 경우</u> <u>2. 공무원의 4촌 이내의 친족(「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 직무관련자인 경우</u> <u>3. 공무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u> <u>4.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임직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인 경우</u> <u>5. 공무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직무관련자를 대리하거나 직무관련자에게 고문·자문 등을 제공하거나 해당 대리·고문·자문 등의 업무를 하는 법인·단체에 소속되어 있는</u>	<u><삭 제></u>



경우

6. 공무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다음 각 목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단체(이하 “특수관계사업자”라 한다)가 직무관련자인 경우(이 경우 주식·지분, 자본금의 소유는 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인 소유관계를 기준으로 하고, 공직자가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소유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주식 총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인 사업자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지분 총수가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이상인 사업자
다.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이 소유하는 자본금 합산 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인 사업자

7. 시의 퇴직공무원으로서 퇴직 전 5년 이내에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던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8. 학연,지연,종교,직연(직장) 또는 채용동기 등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9. 최근 2년 이내에 인·허가, 계약의 체결, 정책·사업의 결정 또는 집행 등 직무수행으로 직접적인 이익을 주었던 사람 중 지속적인 친분 관계가 형성되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10. 자신과 500만원 이상의 금전거래가 있는 사람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11. 그 밖에 시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자가 직무관련자인 경우

② 직무관련자 또는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해당 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4항 각 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직무 재배정 등 조치 신청의 대상이 된 공무원에게서 그 의견을 받을 수 있고, 해당공무원은 그에 대한 의견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와 제1항 각 호 외의 사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제4항 각호의 조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나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직무 참여의 일시중지
2. 직무 대리자 또는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3. 직무 재배정
4. 전보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를 확인·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을 대체하기 지극히 어려운 경우
2. 국가의 안전보장 및 경제발전 등 공익 증진을 이유로 직무수행의 필요성이 더 큰 경우

⑥ 시장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 제4항에 따른 조치 및 제5항 후단에 따른 확인·점검에 관한 현황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시장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① 시장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 또는 임기를 개시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임용 또는 임기 개시 전 3년간의 내역을 말한다)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직하였던 법인·단체와 그 업무 내용

2. 관리·운영하였던 사업 또는 영리행위의 내용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①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자문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삭 제>

<삭 제>



2. 시가 쟁송 등의 당사자가 되는 직무이거나 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인 경우에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상대방에게 조언·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3. 외국의 정부·기관·법인·단체를 대리하는 행위. 다만, 시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4.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 다만, 시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시장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직무 관련 행위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종료하도록 해당 공무원에게 명하여야 한다.

제8조(가족 채용 제한) ① 시장은 시, 시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삭 제>



②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시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이 시 산하기관에 채용되도록 지시하는 등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의계약 체결 제한) ① 시장은 시, 시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이하 “수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나 특수관계사업자가 시, 시 소속 기관이나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시와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산하기관을 지휘·감독·규제 또는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시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되며, 자신의 가족이 시 산하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

<삭 제>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적 접촉을 하는 경우 시장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다만, 다른 법령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하는 행위

2.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하는 행위

3.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하는 행위

4. 직무관련자인 퇴직자가 비용을 부담하는(퇴직자가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후원자 등이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식사·음주 등의 향응을 함께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사전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접촉을 마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퇴직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19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2. (생략)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제19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

-----.

1. 2. (현행과 같음)

3. -----

---- 전가(轉嫁)-----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가.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1조(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의 금지) ① 공무원은 관용 차량·선박·항공기·청사·관사·건설 중기 등 공용물과 예산의 사용으로 제공되는 항공마일리지, 적립포인트 등 부가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비위행위의 적발 시 공용재산 사적사용 및 취득비용 전액(공용재산상 손해의 원금 및 이자비용 포함)의 3배 이내에서 환수 조치 할 수 있다.

제22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② (생략)

③ 제24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

다.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업무를 관장하는 공직유관단체

5. -----
-----, 제4호 각 목의 기관 또는 단체-----

<삭 제>

제22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례금 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收受)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생략)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등으로서 별표 1의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3.~8. (생략)

④ ~ ⑥ (생략)

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처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 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은 사례금을 받는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시장에게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

1. (현행과 같음)

2. -----

----- 「부
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
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
는 -----

3.~8. (현행과 같음)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4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② -----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
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그
러하지 아니하다.

③ ~ ⑩ (생략)

제25조(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① 공
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
속(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만 해당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특수
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
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직
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무상인 경우
를 포함한다)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
15호 서식에 따라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1.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
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
회사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2. 부동산, 자동차, 선박, 항공기, 건
설기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산
을 거래하는 행위. 다만, 공매·경매
·입찰 및 공개추첨(이하 “공매등”

----- 서면(전자문서
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
해야 한다. -----

-----.

③ ~ ⑩ (현행과 같음)

<삭제>



이라 한다)을 통한 거래 행위는 제외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 거래 행위 외에 물품(일상생활용품은 제외한다), 용역, 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다만, 구매등을 통한 계약 체결 행위 또는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 행위는 제외한다.

② 공무원은 자신,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특수관계사업자가 공무원 자신의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이거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 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과 관련된 직무 수행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직무관련자나 직무관련공무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거래 등의 행위를 마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자신의 거래 등의 행위가 아니거나 제3자가 중개 또는 대리하여 거래한 경우로서 미리 이를 알고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거래 등의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 신고한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제5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별표 1]

<삭 제>



사적 이해관계 신고서

[illegible]

[별지 제4호 서식]

[illegible]

<삭 제>

[별지 제5호 서식]

<삭 제>

[illegible]

2000 2001 2002

<삭 제>

[illegible]

광양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0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규칙 제929호

붙임 : 광양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광양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광양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실·과·소·읍·면·동”을 “실·단·과·읍·면·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실·과·소·읍·면·동장”을 “실·단·과·읍·면·동장”으로 한다.

제4호제2항의 “실·과·소장”을 “실·단·과·국·소장”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7. (생략) 8. “실무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u>실·과·소·읍·면·동</u> 등을 말한다. 9.~11. (생략) 12.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최상위자인 <u>실·과·소·읍·면·동장</u> 등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7. (현행과 같음) 8. “실무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u>실·단·과·읍·면·동</u> 등을 말한다. 9.~11. (현행과 같음) 12. ----- ----- ----- <u>실·단·과·읍·면·동장</u> -----.
제4조(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생략) ② 위원회의 구성은 부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부서의 장 및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부서 <u>실·과·소장</u> 등으로 하여 총 10명 내외로 한다. ③ ~ ⑤ (생략)	제4조(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실·단·과·국·소장</u> ----- -----. ③ ~ ⑤ (현행과 같음)



**광양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4년 3월 20일

광 양 시 장 정 인 화

광양시 규칙 제930호

붙임 : 광양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광양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광양시 자체감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직속기관·사업소, 출장소”를 “직속기관·사업소”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적용범위)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 ----- ----- ----- -----.
1. 광양시의 본청, <u>직속기관·사업소</u> , <u>출장소</u> 및 읍·면·동, 의회사무국	1. ----- <u>직속기관·사업소</u> -----
2.~5. (생략)	2.~5. (현행과 같음)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개별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3. 20.

광 양 시 장

○ 도로명주소

구 분	고 시 대 상	고시조서	비 고
도로명주소 (건물번호) 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성황수동로 13 (성황동) 외 6건	별지참조	
	아 래 빈 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민원지적과(☎797-2796)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4. 3. 20.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에 의거 공법 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앞으로 공공기관에 민원신청 및 서류제출 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 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건물번호) 고시 대상

연번	업무구분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 사유
계	건물번호부여 7건					
1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성황동 0	전라남도 광양시 성황수동로 13 (성황동)	20240320	20210210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마을지명에서 인용
2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청암리 734-5	전라남도 광양시 진상면 청도길 6-9	20240320	20081001	행정리명에서 인용
3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04-2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중흥로 52-16	20240320	20081001	중흥사와 중흥산성에서 인용
4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대죽리 596-5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마당재길 25-2	20240320	20200624	옛 지명에서 인용
5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대죽리 596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마당재길 25-4	20240320	20200624	옛 지명에서 인용
6	건물번호변경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마당재길 27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마당재길 25-6	20240320	20200624	옛 지명에서 인용
7	건물번호부여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신금리 1978	전라남도 광양시 옥곡면 광영의암3길 39	20240320	20200603	사업명인용 및 일련번호식 부여



광양시 도로구간(1차 종속도로) 설정 고시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광양시 도로구간 설정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3월 20일

광 양 시 장

1. 고 시 일: 2024. 3. 20.(수)
2. 고시방법: 시보, 시홈페이지 등
3. 고시내용: 도로구간(1차 종속도로) 설정(붙임조서 참조) 1건
4.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홈페이지(www.gwangyang.go.kr)를 참고하거나 광양시청 민원지적과(☎061-797-27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구간 설정 조서(도면 포함) 1부. 끝.



도로구간 설정 조서

연번	도로명	도로구분	행정구역	도로구간					기초간격 (m)	기초번호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시작지점	종료지점	중심선	연장 (m)	폭 (m)		시작	끝		
1	섬진강자전거길	길	진월면	송금리 1059-2	송금리 610-1	도면 참조	201.797	4	20	13216-1	13216-24	하천명(섬진강)을 활용하여 명명 및 일련번호식 부여	

도로구간(중심선) 위치도



광양시 도로명주소(건물번호) 폐지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제6항에 의거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폐지 고시 합니다.

〈폐지 내역〉

연번	폐지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폐지일	도로명 폐지 사유
1	전남 광양시 봉강면 도솔로 229-21	2024. 3. 20.	건축물 멸실 (※상세내역 붙임참조)
2	이 하 빈 칸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민원지적과 (☎ 797-3389)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4. 3. 20.

광 양 시 장



광양시 도시관리계획(공원 제1호)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정정 및 변경 고시

2024. 3. 7.자로 고시한 (광양시 고시 제2024-62호)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산2임 일원의
광양 도시관리계획(공원 제1호) 결정(변경)사항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다
음과 같이 결정하고 지형도면 승인 사항에 대해 오기사항 정정 및 변경고시 합니다

2024. 3. 21.

광 양 시 장

가. 도시관리계획(공원) 결정(변경) 조서(정정 후 변경)
(정정 전)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시설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서산공원	근린공원	광양읍 칠성리 산2임 일원	355,562	-	355,562	1986.07.07. (2020.07.01.) 광양시 242호	미집행 구간 실효

(정정 후 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시설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증·감		
변경	1	서산공원	근린공원	광양읍 칠성리 산2임 일원	1,806,000	354,345	감)1,451,655	1986.07.07. (2020.07.01.) 광양시 242호	미집행 구간 실효



나. 공원조성계획(공원 제1호) 결정(변경) 조서(정정 후 변경)
(정정 전)

구 분	시설면적(㎡)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기정	변경	변경후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355,562	-	355,562	1,245	629	1,245	629	시설률 17.6%
시설소계	81,384	감)18,859	62,525	1,245	629	1,245	629	
도로 및 광장	7,061	감)4,610	2,451	-	-	-	-	
조경시설	6,725	감)1,254	5,471	-	-	-	-	
휴양시설	47,276	감)9,099	38,177	-	-	-	-	
유희시설	390	감)390	0	-	-	-	-	
운동시설	488	감)488	0	-	-	-	-	
교양시설	6,459	감)2,656	3,803	1,200	629	1,200	629	
편익시설	12,985	감)362	12,623	45	-	45	-	
녹지	274,178	증)18,859	293,037	-	-	-	-	

(정정 후 변경)

구 분	시설면적(㎡)							비고
	부지면적			건축면적				
	기정	변경	증·감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1,806,000	354,345	감)1,451,655	1,245	653.09	1,245	629.22	
시설소계	120,112	62,525	감)57,587	1,245	653.09	1,245	629.22	미집행 구간 실효
도로 및 광장	26,907	2,451	감)24,456	-	-	-	-	
조경시설	11,375	5,471	감)5,904	-	-	-	-	
휴양시설	51,394	38,177	감)13,217	-	-	-	-	
유희시설	390	0	감)390	-	-	-	-	
운동시설	2,150	0	감)2,150	-	-	-	-	
교양시설	6,033.98	3,803	감)2,230.98	774.98	653.09	774.98	629.22	
편익시설	21,862.02	12,623	감)9,239.02	470.02	-	470.02	-	
녹지	1,685,888	291,820	감)1,394,068	-	-	-	-	



다. 변경사유서 (정정)

(정정 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서산공원	■ 시설면적 변경: 감) 18,859 m² - 도로 및 광장: 감) 4,610 - 조경시설: 감) 1,254 - 휴양시설: 감) 9,099 - 유희시설: 감) 390 - 운동시설: 감) 488 - 교양시설: 감) 2,656 - 편익시설: 감) 362 ■ 녹지면적 변경: 증) 18,859 m²	■ 2020.7.1.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하여 사유지 면적의 공원구역 실효됨에 따라 현재 여건 반영 ■ 편익시설(주차장 등), 휴양시설, 교양시설 등 추가로 근린공원 기능 향상을 도모

(정정 후 변경)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서산공원	■ 시설면적 변경: 감) 57,587m² - 도로 및 광장: 감) 24,456m² - 조경시설: 감) 5904m² - 휴양시설: 감) 13,217m² - 유희시설: 감) 390m² - 운동시설: 감) 2,150m² - 교양시설: 감) 2,230,98m² - 편익시설: 감) 9,239,02m² ■ 녹지면적 변경: 감) 1,394,063m²	■ 2020.7.1. , 2024. 3. 14. 도시공원 일몰제로 인하여 공원구역이 일부 실효됨에 따라 현재 여건 반영 ■ 편익시설(주차장 등), 휴양시설, 교양시설 등 추가로 근린공원 기능 향상을 도모



라. 세부시설 결정(변경) 조서(정정 후 변경)
(정정 전)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부 지 면 적 (㎡)			시설면적(㎡)				비 고
						건 축 면 적		연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355,562	-	355,562	1,245	629	1,245	629	
시설소계			81,384	감)18,859	62,525	1,245	629	1,245	629	
도로 및 광장	소 계		7,061	감)4,610	2,451	-	-	-	-	
	1-1	산책로	5,810	감)3,359	2,451	-	-	-	-	
	1-2	광장	1,251	감)1,251	-	-	-	-	-	
조경 시설	소 계		6,725	감)1,254	5,471	-	-	-	-	
	2-1(폐지)	생명의 숲	6,725	감)6,725	-	-	-	-	-	
	2-1(신설)	데크로드 1	-	증)4,232	4,232	-	-	-	-	
	2-2(신설)	데크로드 2	-	증)110	110	-	-	-	-	
	2-3(신설)	데크로드 3	-	증)35	35	-	-	-	-	
	2-4(신설)	데크로드 4	-	증)8	8	-	-	-	-	
	2-5(신설)	데크로드 5	-	증)3	3	-	-	-	-	
	2-6(신설)	데크로드 6	-	증)1,083	1,083	-	-	-	-	
휴양 시설	소 계		47,276	감)9,099	38,177	-	-	-	-	
	3-1	전망쉼터	41,961	감)3,784	38,177	-	-	-	-	
	3-2(폐지)	휴양쉼터	157	감)157	-	-	-	-	-	
	3-3(폐지)	수변쉼터	5,158	감)5,158	-	-	-	-	-	
유희 시설	소 계		390	감)390	0	-	-	-	-	
	4-1(폐지)	지압로	390	감)390	-	-	-	-	-	
운동 시설	소 계		488	감)488	0	-	-	-	-	
	5-1(폐지)	운동시설 1	202	감)202	-	-	-	-	-	
	5-2(폐지)	운동시설 2	286	감)286	-	-	-	-	-	
교양 시설	소 계		6,459	감)2,656	3,803	1,200	629	1,200	629	
	6-1 → 4-1(변경)	장애인 복지관	6,459	감)2656	3,803	-	-	-	-	
편익 시설	소 계		12,985	감)362	12,623	-	-	-	-	
	7-1 →5-1(변경)	주차장	10,121	감)2,081	8,040	-	-	-	-	
	7-2 →5-2(변경)	주차장2	2,354	증)2,229	4,583	-	-	-	-	
	7-3(폐지)	화장실	510	감)510	-	45	-	45	-	
	녹 지		274,178	증)18,859	293,037	-	-	-	-	



(정정 후)

구분	도면 표시	시설명	부 지 면 적 (㎡)			시설면적(㎡)				비 고
						건 축 면 적		연 면 적		
			기정	변경	증·감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1,806,000	354,345	감)1,451,655	1,245	653.09	1,245	629.22	
시설소계			120,112	62,525	감)57,587	1,245	653.09	1,245	629.22	
도로 및 광장	소 계		26,907	2,451	감)24,456	-	-	-	-	
	1-1	산책로	25,656	2,451	감)23,205	-	-	-	-	
	1-2	광장	1,251	-	감)1,251	-	-	-	-	
조경 시설	소 계		11,375	5,471	감)5,904	-	-	-	-	
	2-1(폐지)	생명의 숲	11,375	-	감)11,375	-	-	-	-	
	2-1(신설)	데크로드 1	-	4,232	증)4,232	-	-	-	-	
	2-2(신설)	데크로드 2	-	110	증)110	-	-	-	-	
	2-3(신설)	데크로드 3	-	35	증)35	-	-	-	-	
	2-4(신설)	데크로드 4	-	8	증)8	-	-	-	-	
	2-5(신설)	데크로드 5	-	3	증)3	-	-	-	-	
	2-6(신설)	데크로드 6	-	1,083	증)1,083	-	-	-	-	
휴양 시설	소 계		51,394	38,177	13,217	-	-	-	-	
	3-1(폐지)	힐링쉼터	675	-	감)675	-	-	-	-	
	3-2(폐지)	휴양쉼터	236	-	감)236	-	-	-	-	
	3-3 →3-1(변경)	전망쉼터	44,683	38,177	감)6,506	-	-	-	-	
	3-4(폐지)	수변쉼터	5,800	-	감)5,800	-	-	-	-	
유희 시설	소 계		390	0	감)390	-	-	-	-	
	4-1(폐지)	지압로	390	-	감)390	-	-	-	-	
운동 시설	소 계		2,150	0	감)2,150	-	-	-	-	
	5-1(폐지)	운동시설 1	394	-	감)394	-	-	-	-	
	5-2(폐지)	운동시설 2	476	-	감)476	-	-	-	-	
	5-3(폐지)	운동시설 3	391	-	감)391	-	-	-	-	
	5-4(폐지)	운동시설 4	511	-	감)511	-	-	-	-	
	5-5(폐지)	운동시설 5	378	-	감)378	-	-	-	-	
교양 시설	소 계		6033.98	3,803	감)2,230.98	-	-	-	-	
	6-1 → 4-1(변경)	장애인 복지관	6033.98	3,803	감)2,230.98	774.98	653.09	774.98	629.22	
편익 시설	소 계		21,862.02	12,623	감)9,239.02	-	-	-	-	
	7-1(폐지)	전망대 1	130	-	감)130	-	-	-	-	
	7-2(폐지)	전망대 2	120	-	감)120	-	-	-	-	
	7-3 →5-1(변경)	주차장	10,118	8,040	감)2,078	-	-	-	-	
	5-2(신설)	주차장2	-	4,583	증)4,583	-	-	-	-	
	7-4(폐지)	다목적주차장	10,559	-	감)10,559	-	-	-	-	
	7-5(폐지)	화장실	510	-	감)510	45	-	45	-	
	7-6(폐지)	휴게음식점	425.02	-	감)425.02	425.02	-	425.02	-	
누 계			1,685,888	291,820	감)1,394,068	-	-	-	-	

마. 공원조성계획 관계도서 :게재 생략(광양시청 공원과 비치)

2.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청 공원과(☎061-797-295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도 로 지 정 공 고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용도변경 신고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지정공고 합니다.

2024. 3. 18.

광 양 시 장

1. 공 고 명: 도로지정 공고
2. 지정근거: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제45조 제1항
3. 공고기간: 2024. 3. 18. ~ 2024. 3. 31.(14일간)
4. 도로지정 공고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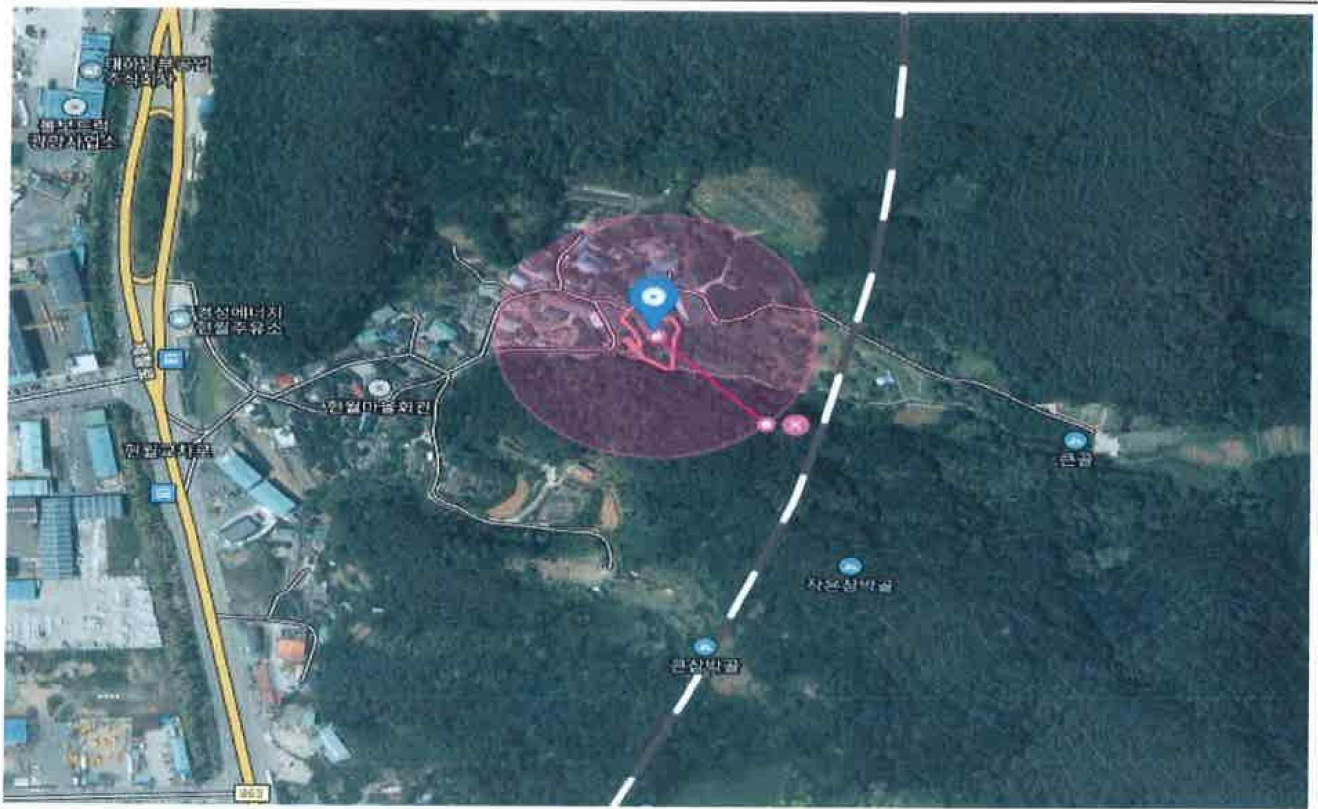
건축위치	도로위치	길이	너비	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동의여부
광양시 광양읍 초남리 454번지	광양시 광양읍 초남리 454번지	12.4m	6m	27㎡	서○영	동의

5. 공고방법: 각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
6. 도로지정 공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광양시 허가과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허가과(☎061-797-287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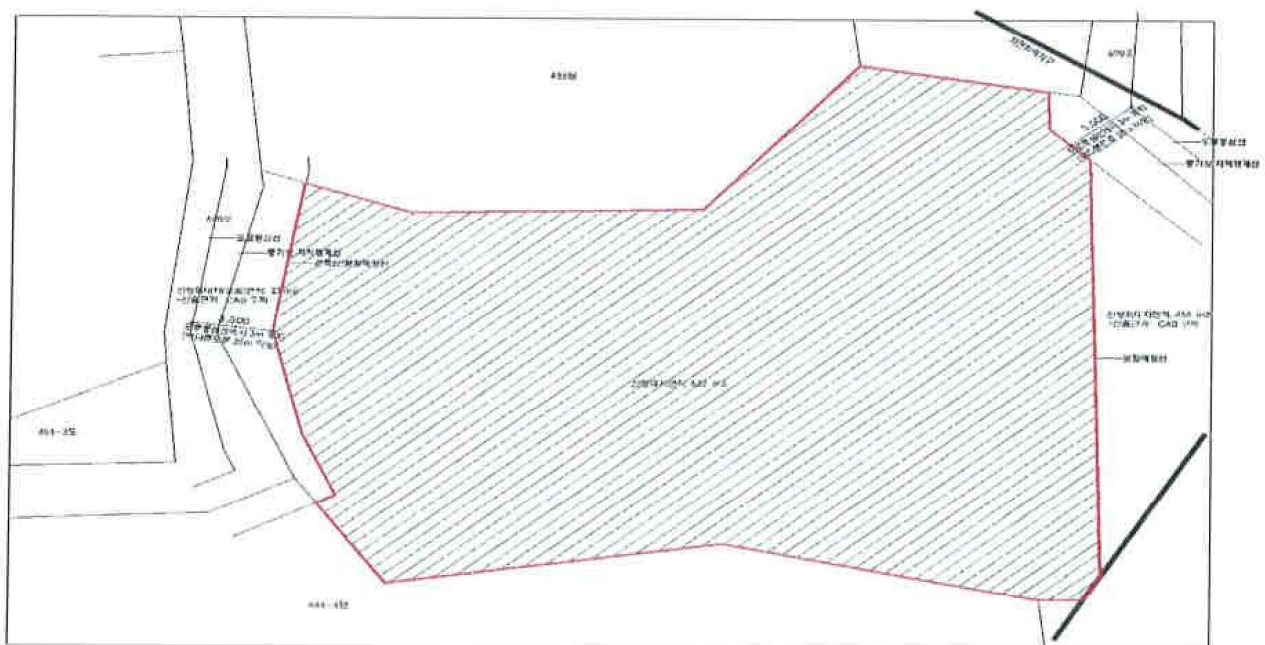
위치도 및 현황도

- 위치도 및 현황도를 작성합니다.



위치도

축척 <임의>



현황도

축척 [√] 1/none



저곡소하천 정비 시행계획(변경)의 공고

광양시 공고 제2024-723호

「소하천정비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소하천 정비 시행계획(변경)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3월 20일

광 양 시



소하천 명	사업 개요									비 고
	공사명	공사 위치		사업장(m)			공사기간		공사 목적	
		사업장 지점	끝나는 지점	측제 (築堤)	호안 (護岸)	기타	착공	준공		
저곡 소하천	저곡 소하천 정비사업	광양시 봉강면 부자리 610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15	1,860	-	교량 6개소 보 및 낙차공 7개소	'21.12.	'24.3.	재해 예방	당 초
저곡 소하천	저곡 소하천 정비사업	광양시 봉강면 부자리 610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15	1,860	-	교량 6개소 보 및 낙차공 7개소	'21.12.	'25.4.	재해 예방	변 경

• 단순변경: 사업기간 및 사업관리자 변경

첨립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 비고란에는 손실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적는다.

210mm×297mm[백상지 80g/㎡(제활용품)]



저곡소하천 정비사업 시행계획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저곡소하천 정비사업

2. 정비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가. 소하천공사의 목적

- 소하천종합계획에 홍수 시 통수능 부족으로 인한 하천범람이 우려되는 지역으로 하폭 확장에 따른 통수능 확보하여 침수예방과 함께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목적이 있음.

나. 소하천공사의 개요

- 사업량 : 축제 1,860m, 교량 6개소, 브 및 낙차공 7개소 등
- 총사업비 : 7,015백만원

다. 소하천공사 시행 지역의 위치 :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봉당리 일원

3.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명칭 및 주소(변경없음)

- 시행자 : 전라남도 광양시장
- 주소 : 전라남도 광양시 시청로 33(중동)

4. 정비사업의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변경)

- 당초) 2021. 12. ~ 2024. 3.
- 변경) 2021. 12. ~ 2025. 4.

5. 수용 또는 사용하고자 하는 토지 및 지장물 조서(변경없음)



6. 정비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도(변경없음)



7. 실시설계도서(변경없음) : 광양시청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 비치

8. 예정 공정표(변경)

- 당초)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4개월로 한다.
- 변경)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1개월로 한다.

9. 사업비 및 자금의 조달계획서

(단위:백만원)

구분 재원별	총사업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이후
계	7,015	500	1,910	3,600	1,005
시 비	7,015	500	1,910	3,600	1,005

10. 준공된 소하천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변경)

- 당초) 관리자 : 광양시장(안전총괄과장)
- 변경) 관리자 : 광양시장(건설과장)

11. 발생 예상 배천부지의 면적 : 해당 없음

12. 자연친화적인 소하천 등 정비에 관한 사항 등 정비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

13. 소하천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14. 기타 공사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 안전총괄과 하천관리팀 (061-797-326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내역 1부.



□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내역(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권자	
	시	면	리			공무	민업	주소	성명
1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10-4	답	208	2		광양시
2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10-5	답	25	25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항교길 9-24, 씨동 ***호 (태양아파트)	이·주
3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916-1	잡	41	12		국(기획재정부)
4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08-7	답	38	38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항교길 9-24, 씨동 ***호 (태양아파트)	이·주
5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08-6	답	113	113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항교길 9-24, 씨동 ***호 (태양아파트)	이·주
6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08-5	답	36	36	서울특별시 마포구 한일8길, 3층 ***호(아현동,북화빌라)	이·준
7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04-4	답	472	472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구산리 762-2 매화마을주공 아파트 103-***	김·효
8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916-2	도	1,149	323		국(건설부)
9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56-3	답	94	9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홍재천로 6길 ***(연희동, 2층)	허·영
10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03-1	답	32	32		광양시
11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03	답	285	285	***	김·배
12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57-3	답	89	89	경기도 남양주 시농로3로 88-12, 107동 ***호 (호명동, 오네뜨센트럴)	주·숙
13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58-5	답	177	177	***	이·우
14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69-2	답	19	19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	곽·옥
15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01-1	전	56	56		김·희
16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01	전	63	63		김·희
17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70-2	전	69	69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매천로 8***	이·수
18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70-1	전	222	222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매천로 8***	이·수
19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573-13	답	378	378	5***	이·구
20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573-10	답	106	106	5***	이·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자	
	시	면	리			공부	면적	주소	성명
21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573-2	답	1,076	52	5***	이*구
22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573-11	답	6	6	5***	이*구
23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597-3	답	13	13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	함*옥
24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597-4	답	64	64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	함*옥
25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598-1	답	4	4	충주군 해룡면 서면 2**	최*준
26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598-2	답	90	90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대성동 19-3 영풍고덕아파트 에이동 ***호	최*용 외 1인
27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00-1	답	108	108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최산두길 *	손8자
28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919-4	도	1,235	132		국(건설부)
29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02-1	답	67	67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최산두길 *	손8자
30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73-2	전	174	174	6***	이*석
31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73-3	대	240	24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칠성리 89-5 주공칠성아파트 207-***	김*필
32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68-1	도	349	23		국(국토해양부)
33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67-5	답	545	545	6***	이*석
34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67-6	답	164	164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135-90 고합베스트빌 1402-103	이정현 외 1인
35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68-3	답	524	524	854	박석기
36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91-1	대	200	20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22블록1북트 창덕에버빌아파트 104-***	김*원
37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95-3	대	387	387	***	이*구
38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95-2	대	17	17	***	이*구
39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97-2	답	201	201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석광길 ***	박*기



연번	소재지			지번	지적	면적(㎡)		소유권자	
	시	면	리			공부	면적	주소	성명
40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96-3	답	284	21		광양시
41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98-13	답	30	30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석광길 ***	박*기
42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98-14	답	3	3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석광길 ***	박*기
43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700-1	답	255	249		광양시
44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98-12	답	1	1		전라남도
45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700-7	답	47	47		광양시
46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98-9	답	185	3		전라남도
47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99-1	답	294	3		전라남도
48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700-4	도	2	2		전라남도
49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700-2	도	152	91		광양시
50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700-5	도	55	19		전라남도
51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700-9	답	11	11		광양시
52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700-8	답	29	9		광양시
53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700-6	답	48	48		광양시
54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700-3	답	373	110		광양시
55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703-1	답	50	50		광양시
56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704-1	답	116	116	***	채*학
57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703-2	답	454	454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대평오성로 **	최*숙 외 3인
58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920	도	2,149	22		국(건설부)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권자	
	시	면	리			공부	면적	주소	성명
59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75-3	도	21	21	광양읍 읍내리 ***	김*재
60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67-3	답	259	227		광양시
61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88-2	천	442	335		광양시
62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88	천	170	170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	이*모
63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89	임	60	60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22블럭1축트 창덕에버빌아파트 104-***	김*근
64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927	도	175	169		국(건설부)
65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90	대	43	43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용강리 22블럭1축트 창덕에버빌아파트 104-***	김*원
66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92-6	대	142	30		광양시
67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92-2	도	350	39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68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95-1	대	55	55		광양시
69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96-4	답	246	219		광양시
70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701-4	도	222	82		전라남도
71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941-1	구	1,426	116		국(농림수산부)
72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922	도	481	458		국(건설부)
73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942-1	도	631	563		국(농림수산부)
74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921	천	13,260	9,415		국(건설부)
75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9-1	답	1,486	300		국(기획재정부)
76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12	유	73	73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77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13	유	344	344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 ²)		소유권자	
	시	면	리			공부	면업	주소	성명
78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27-3	유	96	85		국(농림수산부)
79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811-2	도	154	154		국(농림수산부)
80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811-3	천	185	185		국(건설교통부)
81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937-15	답	73	73	부산광역시 해운대 구우동 1498 트럼프월드센텀 비-***	이*배
82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926-4	구	45	45		국(건설부)
83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392	답	104	104	봉강면 봉당리 ***	이*호
84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391-1	천	705	705		국(건설교통부)
85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392-1	답	60	60	봉강면 봉당리 ***	이*호
86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1049-5	구	347	7		국(농림수산부)
87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391-2	답	47	47	부저리 ***	백*봉
88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1048-4	도	573	217		국(농림수산부)
89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978-6	천	135,471	11,087		국(건설부)
90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15-1	유	904	904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한국농어촌공사
91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1001	도	1,732	20		국(건설부)
92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907	구	19,828	591		국(건설부)



□ 수용 또는 사용할 지장물 내역(변경없음)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용	단위	소유권자
	시	면	리						
1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916-1	감나무	2m	2	주	국(기획재정부)
2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08-7	저온저장고		10	㎡	이·주
3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08-6	감나무	2.5m	3	주	이·주
4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08-5	키위나무	2m	5	주	이·준
5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04-4	관정		1	계소	김·효
					매실나무	1.5m	1	주	
					매실나무	2.5m	6	주	
					키위나무	2m	8	주	
6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916-2	보조전주	10m	1	본	한국전력공사
7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56-3	앵나무	2m	6	주	허·평
					감나무	3m	1	주	
					감나무	3m	2	주	
					매실나무	1.5m	1	주	
					매실나무	3m	7	주	
8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03	감나무	5m	7	주	김·배
					매실나무	3m	10	주	
9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57-3	앵나무	6m	1	주	주·숙
					감나무	3m	2	주	
					매실나무	2.5m	6	주	
					두릅나무	2m	1	주	
					석류나무	2m	1	주	
					구기자나무	1m	1	주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단위	소유권자
	시	면	리						
10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58-5	매실나무	3m	10	주	이·우
					사과나무	2.5m	7	주	
11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70-1	밤나무	4m	37	주	이·우
					비파나무	3m	1	주	
					감나무	3m	6	주	
					살구나무	5m	1	주	
					매실나무	4m	4	주	
					영나무	2m	4	주	
12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573-13	감나무	4m	20	주	이·구
					헬스	H=1.8	6	m	
					헬스	H=1.8	3	m	
13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573-10	감나무	4m	8	주	이·구
14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573-2	대추나무	3m	1	주	이·구
15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597-3	철쭉묘목	0.3m	100	주	함·옥
16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597-4	철쭉묘목	0.3m	100	주	함·옥
					매실나무	1m	1	주	
17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598-1	철쭉묘목	0.3m	50	주	최·준
18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598-2	철쭉묘목	0.3m	50	주	최·용외1인
19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00-1	옹막		17	m ²	손·자
20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919-4	한전주	10m	1	본	한국전력공사
					오수면술		1	개소	국(건설부)
					옹막		12	m ²	



연번	소재지			지번	불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단위	소유권자
	시	면	리						
21	광양시	통강면	부저리	602-1	아로니아	2m	2	주	손·자
					울막		2.3	m²	
22	광양시	통강면	부저리	673-2	담장	H=1.5	4	m	이·석
					본채		11	m²	
					두릅나무	2m	40	주	
					매실나무	2.5m	9	주	
					감나무	4m	4	주	
					사과나무	2m	1	주	
					잔파나무	1m	7	주	
					목련나무	5m	3	주	
					살구나무	3m	1	주	
23	광양시	통강면	부저리	673-3	참고		9	m²	김·말
					본채		24	m²	
					담장	H=1.5	23	m	
					대문	2.0*2.0	4	m²	
					보안통		1	개소	
					감나무	4m	1	주	
					비파나무	4m	1	주	
					영나무	2m	2	주	
					감나무	3m	1	주	
					무화과	2m	1	주	
					동백나무	5m	1	주	
					사철나무	2m	30	주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단위	소유권자
	시	면	리						
24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67-5	창고		99	㎡	이•석
					감나무	4m	2	주	
					철쭉	0.5m	1	주	
					매실나무	2m	31	주	
					감나무	2.5m	2	주	
					사과나무	2m	5	주	
					복분자	1.5m	2	주	
25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67-6	가건물		29	㎡	어•천외1인
26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68-3	한전주	10m	1	본	한국전력공사
27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95-3	황금촉박	3m	3	주	이•구
					비파나무	4m	1	주	
					감나무	4m	1	주	
					한전주	10m	1	본	
					감나무	4m	2	주	
					오수면솔		1	개소	
					은행나무	8m	1	주	
					소나무	1.2m	1	주	
					풍백나무	2.5m	1	주	
					철쭉	1.2m	1	주	
					통신주	8m	1	본	KT
28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97-2	참다래나무	1.6m	2	주	박•기
					감나무	3.5m	1	주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단위	소유권자
	시	면	리						
29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700-3	전나무	3.5m	15	주	광양시
					매실나무	1.5m	2	주	
					동백나무	3m	10	주	
					한천주	10m	1	본	
30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704-1	소나무	3m	4	주	채·탁
					감나무	2.5m	6	주	
31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703-2	소나무	3m	47	주	최·숙외3인
32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67-3	오수맨홀		1	개소	광양시
33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88-2	오수맨홀		1	개소	광양시
					오수맨홀		1	개소	
					오수맨홀		1	개소	
34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689	감나무	4m	1	주	김·근
35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927	한천주	14m	1	본	국(건설부)
36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701-4	한천주	16m	1	본	전라남도
37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942-1	통신주	8m	1	본	국(농림수산부)
					한천주	14m	1	본	
					컨테이너		27.1	m ²	
38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921	매실나무	1.6m	17	주	국(건설부)
					매실나무	1.5m	6	주	
					오수받이		1	개소	
					오수받이		1	개소	
					오수맨홀		1	개소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단위	소유권자
	시	면	리						
38	광양시	봉강면	부제리	921	키위나무	2m	11	주	국(건설부)
					장미	2m	2	주	
					체리나무	2m	2	주	
					자두나무	2m	1	주	
					포도나무	2m	1	주	
					울막		17	㎡	
					감나무	3m	1	주	
					감나무	4m	1	주	
					참고		6	㎡	
					철쭉요복	0.3m	2,000	주	
					감나무	4m	1	주	
					매실나무	3m	1	주	
					보조전주	10m	1	본	한국전력공사
					한전주	10m	1	본	
					한전주	10m	1	본	
39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9-1	매실나무	1.6m	11	주	국(기획재정부)
					매실나무	1.5m	13	주	
40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1048-4	한전주	10m	1	본	국(농림수산부)
41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978-6	매실나무	3m	96	주	국(건설부)
					전나무	5m	6	주	
					동백나무	3m	9	주	
					소나무	4m	4	주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및규격	수량	단위	소유권자
	시	면	리						
41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978-6	철쭉	0.5m	150	주	국(건설부)
					참고	4.2*2	8	m²	
					참고	4*4	16	m²	
					저온참고	3.5*3	11	m²	
					가로등	5m	1	개소	
					하우스	2.3*1.7	4	m²	
					매실나무	1.6m	7	주	
42	광양시	봉강면	봉당리	15-1	매실나무	3m	6	주	한국농어촌공사
43	광양시	봉강면	부저리	907	감나무	4m	25	주	국(건설부)
					보리수	2m	1	주	
					매실나무	2m	2	주	
					단풍나무	6m	1	주	
					은복서	6m	1	주	
					장미	2m	1	주	



「쌍의사 도로 정비 및 주차장 조성사업」 보상계획(열람) 공고

「쌍의사 도로 정비 및 주차장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일

광 양 시 장

1. 사업개요

- 사업명 : 쌍의사 도로 정비 및 주차장 조성사업
- 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신통리 483-1번지 외 3필지
- 사업시행자 : 광양시장

2. 보상대상 토지 및 물건

- 광양시 봉강면 신통리 483-1번지 외 3필지 (1,060㎡), 물건 별첨

3. 토지·물건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 기간 : 2024. 3. 20. ~ 2024. 4. 3.
- 열람장소 : 광양시 문화예술과 문화재팀(☎061-797-2732)
※ 토지·물건 조서 : 별첨
- 이의신청장소 : 광양시 문화예술과 문화재팀
- 이의신청방법 :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토지·물건조서의 내용에 누락 등 이의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음.
- 이의조치 : 이의신청 내용에 대하여 현장 확인 후 시정조치 하며, 이의 신청자에게 결과 통보
- 토지·물건조서 확정 :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토지·물건조서의 내용대로 확정되며, 누락 등의 물건에 대하여 사업시행자는 책임지지 않음.



4. 보상시기

○ 2024. 4 ~ 5월 중(감정평가 및 보상액 산정 후 개별통지)

※ 정확한 일정은 추후 개별 통지할 예정이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보상방법 및 절차

○ 보상방법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규정에 의거 3인(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 평균치를 보상가격으로 결정하고 협의요청
- 같은 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려는 토지소유자는 보상 대상 토지면적의 1/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 대상 토지의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우리 시에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음.

○ 보상절차 : 보상계획(열람) 공고→토지 등의 감정평가→손실보상 협의→보상

○ 협의조건 : 토지 및 물건 등에 압류 및 근저당 등이 설정되어 있는 소유권이외의 모든 권리는 소유자가 권리를 해지한 후 협의에 응하여야 함.

○ 토지소유자의 감정평가업자(1인) 추천

- 1) 요건 :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1/2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할 경우
- 2) 기한 :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 3) 제한 : 토지소유자는 감정평가업자 추천에 대한 동의를 2회 이상 할 수 없음.

6. 기타사항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을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개별통지를 받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본 공고로 대신합니다.
- 보상액, 구비서류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감정평가가 완료된 후 보상시기에 맞추어 상세 안내문을 별도 통지할 예정입니다.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광양시 문화예술과 문화재팀(061-797-27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토 지 조 서

연번	시군구	리동	지 번		지 목	당 초 면 적 (㎡)	편 입 면 적 (㎡)	공 유 지분	실제 이용 상황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의 종류및 내용	비 고
			당 초	편입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3658	1030								
1	광양시	봉강면 신룡리	483-1	483-1	대	750	750	1	대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신룡리 461	봉강면신룡리새 마을신촌부락				
2	광양시	봉강면 신룡리	394-1	394-1	대	221	110	1	대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신룡리 461	봉강면신룡리새 마을신촌부락				
3	광양시	봉강면 신룡리	397-1	397-1	답	2667	150	1/2	답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남문1길 **	오*심				
								1/2	답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남문1길 **	박*천				
4	광양시	봉강면 신룡리	396-4	396-4	답	20	20	1	답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신룡리 461	봉강면신룡리새 마을신촌부락				



물 건 조 서

연번	시군구	리동	물건의 종류	용도	구조 및 규격	수량 및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권리의 종류및 내용내용	비 고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	광양시	봉강면 신룡리 483-1	건축물	전시장(체험장)	시멘트벽돌/기타지 붕(아스팔트씽글)	90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신룡리 461	봉강면신룡리새 마을신촌부락				
2	광양시	봉강면신룡리 483-1	건축물	찜질방	시멘트벽돌/기타지 붕(아스팔트씽글)	116.09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신룡리 461	봉강면신룡리새 마을신촌부락				
3	광양시	봉강면신룡리 483-1	관정	관정	대형	1식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신룡리 461	봉강면신룡리새 마을신촌부락				
4	광양시	봉강면신룡리 483-1	세면장	세면장	콘크리트	1식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신룡리 461	봉강면신룡리새 마을신촌부락				
5	광양시	봉강면신룡리 394-1	건축물	제2종근린생활 시설(제조업소)	철근콘크리트/기타 지붕(아스팔트씽글)	30.24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신룡리 461	신촌마을영농회				
6	광양시	봉강면신룡리 394-1	정수기	정수기		1대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신룡리 461	신촌마을영농회				
7	광양시	봉강면신룡리 394-1	수도계량기	수도계량기		1식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신룡리 461	신촌마을영농회				
8	광양시	봉강면신룡리 394-1	가로등	가로등		1식	전라남도 광양시 봉강면 신룡리 461	신촌마을영농회				



광양시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공람 및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수립중인 광양시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15조 규정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공람 및 설명회 개최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 제출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3월 20일

광 양 시 장

1. 계획의 개요

- 가. 계획명 : 광양시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
- 나. 위치 : 전라남도 광양시 행정구역 및 주변 교통영향권
- 다. 규모 : 광양시 행정구역 내 농어촌도로(면도, 리도, 농도 : 93개노선 약 365.1km)
- 라. 계획수립기관 : 광양시

2. 공람기간 및 장소

- 가. 공람목적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 나. 공람기간 : 2024. 03. 20. ~ 2024. 04. 19. (토요일·공휴일 제외 22일간)
- 다. 공람장소
 - 1) 광양시 : 광양시청 도로과, 광양읍사무소, 봉강면사무소, 옥룡면사무소, 옥곡면사무소, 진상면사무소, 진월면사무소, 다압면사무소
 - 2) 정보통신망 : 광양시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s://gwangyang.go.kr/kor/>)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https://www.eiass.go.kr/>)

3. 주민설명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일 시	장 소	비 고
2024. 04. 12. (10:00)	광양읍, 광양읍사무소, 대회의실(3층)	광양읍 남등길 6
2024. 04. 12. (14:00)	옥곡면, 옥구슬건강문화센터, 다목적강당(1층)	옥곡면 옥진로 658

4. 의견 제출

- 가. 제출기간 : 공람시작일로부터 공람완료 후 7일간
- 나. 제출방법
 - 1) 공람장소에 서면(書面)으로 제출 또는
 - 2)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www.eiass.go.kr/>) 의견 제출

5. 기타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등 관련 내용은 공람 장소, 광양시청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열람 가능하며, 기타 내용은 광양시청 도로과(061-797-282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광양시 농어촌도로 정비 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
전 략 환 경 영 향 평 가 서(초안)
(요 약 문)

2024. 03.



광 양 시



목 차

1.1 계획의 내용	3
1.2 지역개황	30
1.3 환경보전 목표	31
1.4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33
1.5 환경에 미칠 주요 영향 및 환경보전대책	37
1.6 대안	38
1.7 결론	42



요 약 문

1.1 계획의 내용

계 획 명	■ 광양시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
계 획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행정구역 및 주변 교통영향권
계 획 연 장	■ 총 연장 365.1km(농어촌도로 93개 노선)
계획수립자	■ 광양시
계획승인기관	■ 광양시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4년 ■ 목표년도 : 2028년

■ 정비방향

- 광양시 내 주요 도로망(국도,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 군도) 계획을 수용하여 지역간 도로의 유기적인 연결 및 연계방안을 모색
- 신설위주의 도로건설은 지양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농어촌도로의 관리를 통한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농어촌도로 정비를 기본방향으로 설정

■ 광양시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총괄

구 분	당 초 (A)		변 경 (B)		증 감 (B-A)	
	노선수	연장(km)	노선수	연장(km)	노선수	연장(km)
면도	13	66.1	9	29.2	-4	-36.9
리도	33	125.7	22	66.9	-11	-58.8
농도	47	173.3	49	106.1	2	-67.2
소계	93	365.1	80	202.2	-13	-162.9

■ 읍면별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구분	(정비 전 노선수)	농어촌도로 정비내용					정비 후 노선수
		위계조정 (군도 정비 일부노선 격하)	위계조정 (노선분할)	노선조정 (노선축소)	노선폐지	변경없음 (연장정정)	
광양읍	18	-	2	8	6	2	13
봉강면	11	-	1	5	1	4	11
옥룡면	12	-	2	7	3	-	9
옥곡면	13	-	3	3	4	3	13
진상면	12	-	2	3	3	4	9
진월면	13	-	4	8	1	-	13
다압면	14	1	3	7	3	1	12
합계	93	1	17	41	21	14	80



1.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에 따라 농어촌도로를 효율적으로 정비·개발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기술적 제반사항을 고려한 기초자료 조사 및 평가 등 기본조사 결과를 토대로,
- 광양시 관내 도시여건 변화와 이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도로망 계획을 수립하고,
- 도로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농어촌도로정비법」 제6조에 따른 도로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친환경적 개발계획을 수립함을 목적으로 함

1.1.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 본 계획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에 따른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관련 [별표 2]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임.

<표 1.1.2 - 1>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구 분	개발기본계획의 종류	협의요청시기
2. 개발기본계획 마. 도로의 건설	1)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에 따른 도로기본계획	계획의 확정 전

자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 관련 【별표 2】

1.1.3 계획의 추진경위 및 계획

추진 및 계획일자	추진경위 및 계획
■ 2023. 05.	광양시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계약
■ 2023. 10.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 2023. 10. 06 ~ 10. 27.	평가준비서 심의
■ 2024. 01. 25 ~ 02. 08.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 공개
■ 2024. 03.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 공람 및 협의요청



1.1.4 계획의 내용

가. 계획명

- 광양시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 수립

나. 위 치

- 전라남도 광양시 행정구역 및 주변 교통영향권

다. 계획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광양시 관내(광양읍, 봉강면, 옥룡면, 옥곡면, 진상면, 진월면, 다압면)
- 총 연장 365.1km(농어촌도로 93개 노선)

2)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 : 2024년
- 목표년도 : 2028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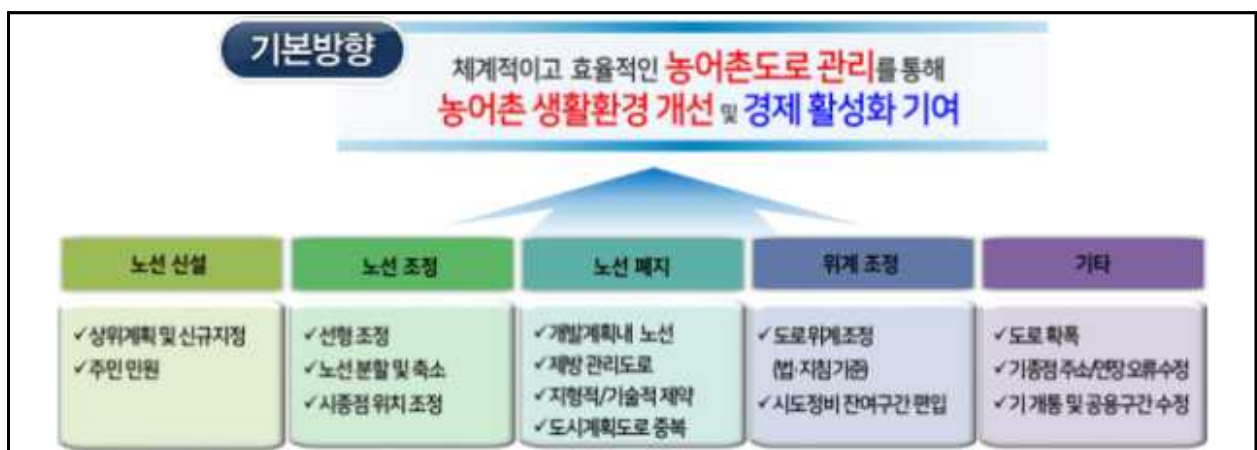
라. 계획수립자 및 승인기관

- 광양시

마. 계획의 내용

1) 광양시 농어촌도로 정비 방향설정

- 광양시 내 주요 도로망(국도,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 군도) 계획을 수용하여 지역간 도로의 유기적인 연결 및 연계방안을 모색
- 신설위주의 도로건설은 지양하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농어촌도로의 관리를 통한 농어촌의 생활환경 개선 및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농어촌도로 정비를 기본방향으로 설정



<그림 1.1.4 - 1> 도로기능별 정비 방향 설정

2) 농어촌도로 정비내용 종합

- 농어촌도로 정비결과, 총 연장은 당초 365.1km에서 202.2km로 변경하여 162.9km(▽ 44.6%)가 감소하였으며, 노선수는 총 93개 노선에서 80개 노선(▽14.0%)이 감소하여 80개 노선으로 정비하였음.

<표 1.1.4 - 1> 광양시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총괄

구 분	당 초 (A)		변 경 (B)		증 감 (B-A)	
	노선수	연장(km)	노선수	연장(km)	노선수	연장(km)
면도	13	66.1	9	29.2	-4	-36.9
리도	33	125.7	22	66.9	-11	-58.8
농도	47	173.3	49	106.1	2	-67.2
소계	93	365.1	80	202.2	-13	-162.9

- 읍면별 농어촌도로 정비결과 위계조정(노선분할 및 군도정비 후 일부노선 격하) 18개, 노선폐지 21개, 노선조정이 가장 많은 41개 노선으로 정비되었음.
- 읍면별로 정비유형을 검토해 본 결과 여건변화가 많은(개발계획 多) 광양읍에서의 노선폐지(6개 노선)와 노선조정(8개 노선)의 정비가 이루어진 것으로 검토되었음.

<표 1.1.4 - 2> 읍면별 농어촌도로 정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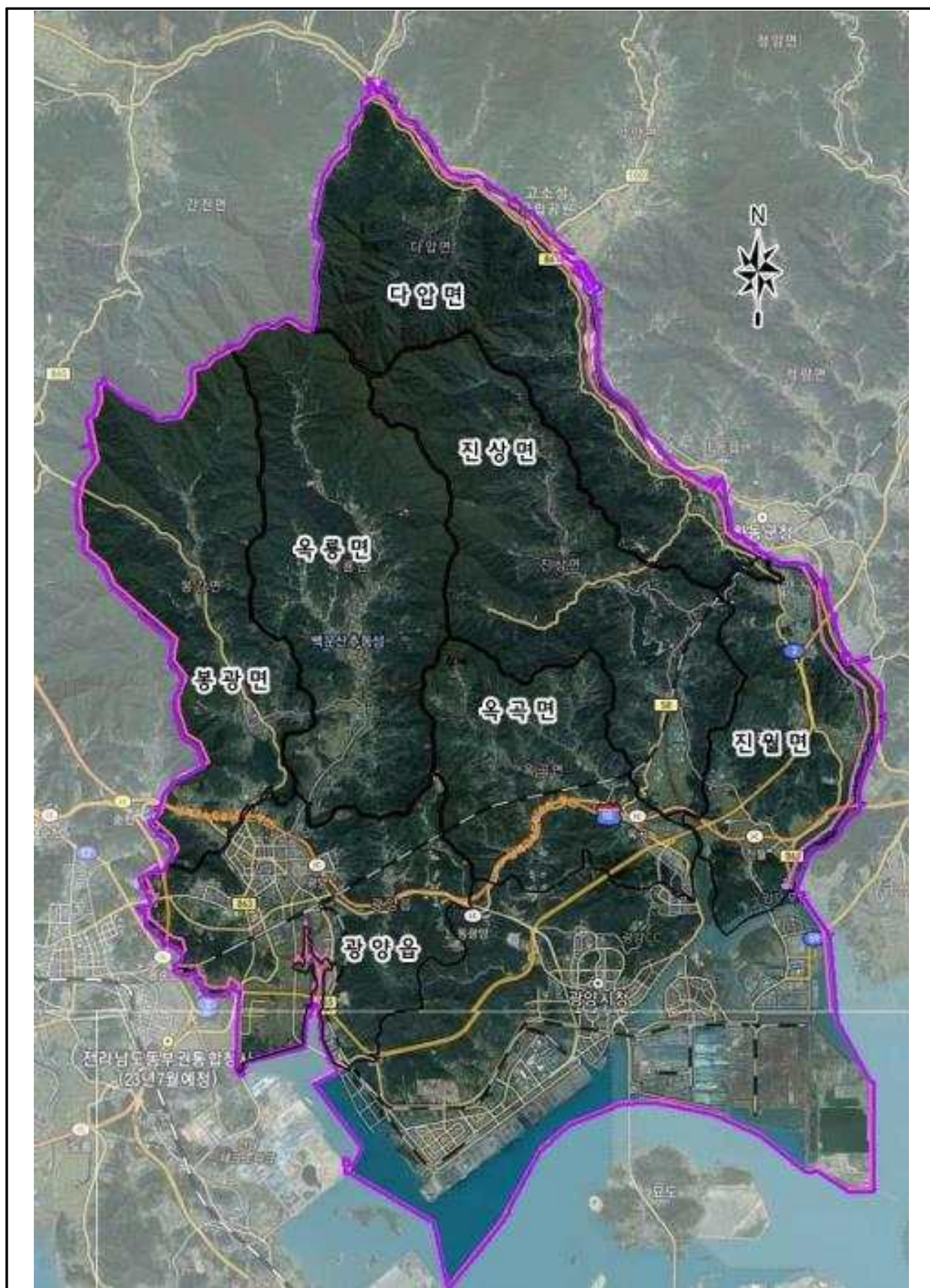
구분	(정비 전 노선수)	농어촌도로 정비내용					정비 후 노선수
		위계조정 (군도 정비 일부노선 격하)	위계조정 (노선분할)	노선조정 (노선축소)	노선폐지	변경없음 (연장정정)	
광양읍	18	—	2	8	6	2	13
봉강면	11	—	1	5	1	4	11
옥룡면	12	—	2	7	3	—	9
옥곡면	13	—	3	3	4	3	13
진상면	12	—	2	3	3	4	9
진월면	13	—	4	8	1	—	13
다압면	14	1	3	7	3	1	12
합계	93	1	17	41	21	14	80





<그림 1.1.4 - 2>광양시 읍·면 위치도





<그림 1.1.4 - 3> 광양시 읍·면 위성사진



3) 농어촌도로 정비내용 종합

가) 광양읍

(1) 정비내용 종합

- 광양읍의 농어촌도로는 당초 18개 노선중 6개 노선 폐지, 2개 노선 위계조정으로 총 13개 농어촌도로 노선으로 정비되었음.

<표 1.1.4 - 3> 농어촌도로 정비내용 종합(광양읍)

구 분	당 초(A)		변 경(B)		증 감(B-A)	
	노선수	연장(km)	노선수	연장(km)	노선수	연장(km)
면도	2	11.5	-	-	-2	-11.5
리도	6	21.1	4	9	-2	-12.1
농도	10	45.8	9	19.6	-1	-26.2
소계	18	78.4	13	28.6	-5	-49.8

(2) 농어촌도로 정비사유 및 세부 정비내용

- 광양읍 관내 총 18개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을 제시함.

<표 1.1.4 - 4> 농어촌도로 정비사유(광양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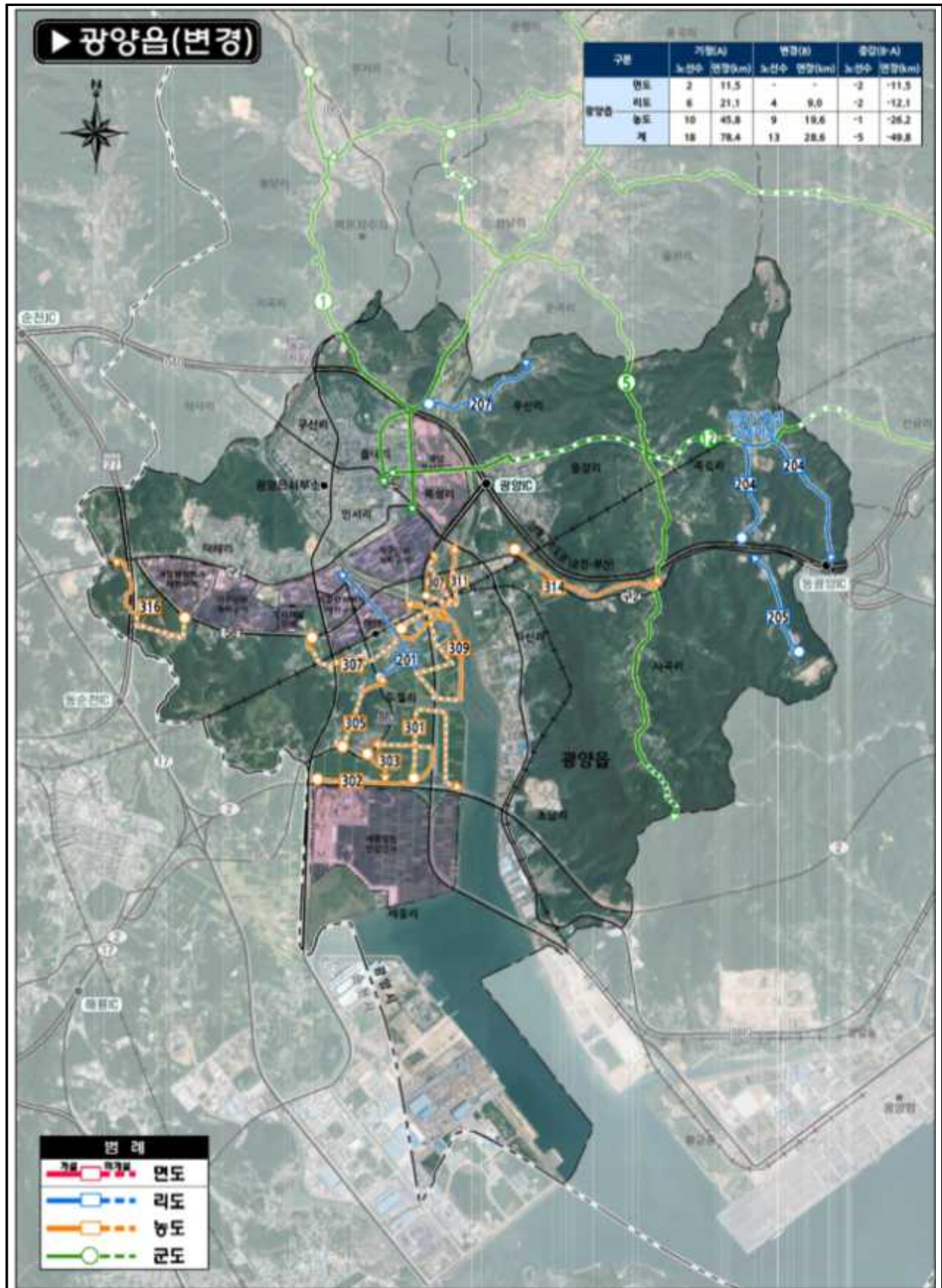
도로		노선명	노선 번호	연 장(km)				정비 구분	정비사유
				포장	비포장	미개설	합계		
면도 (2개)	기정	부목선	광양101	3.0	3.3	-	6.3	위계조정	▷지방도 863호선이 남북축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면도 101호선의 연장이 축소됨에 따라 그 기능이 면도에서 리도와 농도로 위계조정 (광양101 → 광양201, 광양305) - 기·중점 배열방법은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상의 기중점 배열방법인 남쪽에서 북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여 시중점을 변경함
	변경	부목선	광양201	1.7	-	-	1.7		
			광양305	0.4	0.7	-	1.1		
	기정	서해선	광양104	5.2	-	-	5.2	노선폐지	▷도시계획(도로)와 중복 지정되어 도로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농어촌도로지정을 폐지함
변경	서해선	광양104	-						
리도 (6개)	기정	허대선	광양202	2.7	0.7	-	3.4	위계조정	▷세풍일반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연장이 축소 농어촌도로 위계조정 (광양 202 → 광양 303)
	변경	허대선	광양303	0.5	-	-	0.5		
	기정	직호선	광양204	2.8	4.6	-	7.4	노선축소	▷도로개설 실효성 부족구간 노선축소
	변경	직호선	광양204	4.2	-	-	4.2		
	기정	직동선	광양205	1.3	-	-	1.3	변경없음	▷정비내용 없음 - 기·중점 배열방법은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상의 기중점 배열방법인 남쪽에서 북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여 시중점을 변경함
	변경	직동선	광양205	1.3	-	-	1.3		
	기정	계내선	광양207	1.8	-	-	1.8	변경없음	▷정비내용 없음
	변경	계내선	광양207	1.6	0.2	-	1.8		
	기정	교월선	광양208	1.0	2.1	-	3.1	노선폐지	▷도시계획(도로) 중복지정과 지형(산지: 내우산)제약으로 인한 도로개설 실효성 부족구간 노선폐지 (묘지 많음) ▷리도208호선의 노선 기능은 시도 11호선이 충분히 대체 가능함
	변경	교월선	광양208	-					
기정	세덕선	광양209	2.2	1.9	-	4.1	노선폐지	▷도시계획(도로)과 중복으로 노선폐지	
변경	세덕선	광양209	-						



<표 1.1.4 - 4> 계속

도로	노선명	노선 번호	연 장(km)				정비 구분	정비사유	
			포장	비포장	미개설	합계			
농도 (10개)	기정	소봉선	광양301	-	5.0	-	5.0	노선축소	▷세풍일반산업단지 개발 및 여건변화(입체교차로 개설)에 따른 노선축소
	변경	소봉선	광양301	-	2.5	-	2.5		
	기정	중세선	광양302	-	3.2	-	3.2	노선조정	▷여건 변경(입체교차로 개설)에 따른 노선조정 - 기·종점 배열방법은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상의 기종점 배열방법인 남쪽에서 북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여 시·종점을 변경함
	변경	중세선	광양302	1.9	0.6	-	2.5		
	기정	유대선	광양304	-	3.9	-	3.9	노선폐지	▷세풍일반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부지편입에 의한 노선폐지
	변경	유대선	광양304	-					
	기정	덕신선	광양306	-	6.6	-	6.6	노선폐지	▷국지도58호선 개설에 따른 노선중복과 개발사업(개발행위허가제한구역과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따른 토지이용변경에 따른 노선폐지
	변경	덕신선	광양306	-					
	기정	덕목선	광양307	0.7	4.1	-	4.8	노선조정	▷기존 현황도로 및 주변여건을(도로 및 도시개발계획) 고려한 노선조정
	변경	덕목선	광양307	1.4	2.1	-	3.5		
	기정	월목선	광양309	0.3	5.9	-	6.2	노선조정	▷현황도로 및 주변여건(철도역사, 도로건설, 도시개발계획) 변화를 고려한 노선조정(시종점) 변경
	변경	월목선	광양309	1.7	2.4	-	4.1		
	기정	개월선	광양311	-	7.2	-	7.2	노선축소	▷여건변화(광양 목성지구개발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따른 노선축소
	변경	개월선	광양311	0.9	0.3	-	1.2		
	기정	석백선	광양314	0.6	3.3	-	3.9	노선축소	▷현황도로를 고려(시도5호선 농지접근 역할 수행)한 노선축소 - 축소구간 (억만마을~임기마을~쌍백마을) 시도5호선 이용가능
	변경	석백선	광양314	2.3	-	-	2.3		
	기정	점본선	광양315	0.4	2.8	-	3.2	노선폐지	▷지형(산지) 제약으로 인한 도로개설 실효성 부족구간 노선폐지 - 폐지구간 (본정마을~점동마을) 연결 기능은 군도 5호선으로 대체가능
	변경	점본선	광양315	-					
	기정	인반선	광양316	-	1.8	-	1.8	노선조정	▷기존 현황도로 및 주변여건을 고려한 노선조정
	변경	인반선	광양316	0.7	0.6	0.6	1.9		





<그림 1.1.4 - 4> 광양시 농어촌도로 정비계획(광양읍)

나) 봉강면

(1) 정비내용 종합

- 봉강면의 농어촌도로는 당초 11개 노선중 1개 노선 폐지, 1개 노선 분할로 총 11개 농어촌도로 노선으로 정비되었음.

<표 1.1.4 - 5> 농어촌도로 정비내용 종합(봉강면)

구 분	당 초(A)		변 경(B)		증 감(B-A)	
	노선수	연장(km)	노선수	연장(km)	노선수	연장(km)
면도	2	10.9	2	9.7	-	-1.2
리도	3	12.3	3	7.0	-	-5.3
농도	6	22.0	6	12.9	-	-9.1
소계	11	45.2	11	29.6	-	-15.6

(2) 농어촌도로 정비사유 및 세부 정비내용

- 봉강면 관내 총 11개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을 제시함.

<표 1.1.4 - 6> 농어촌도로 정비사유(봉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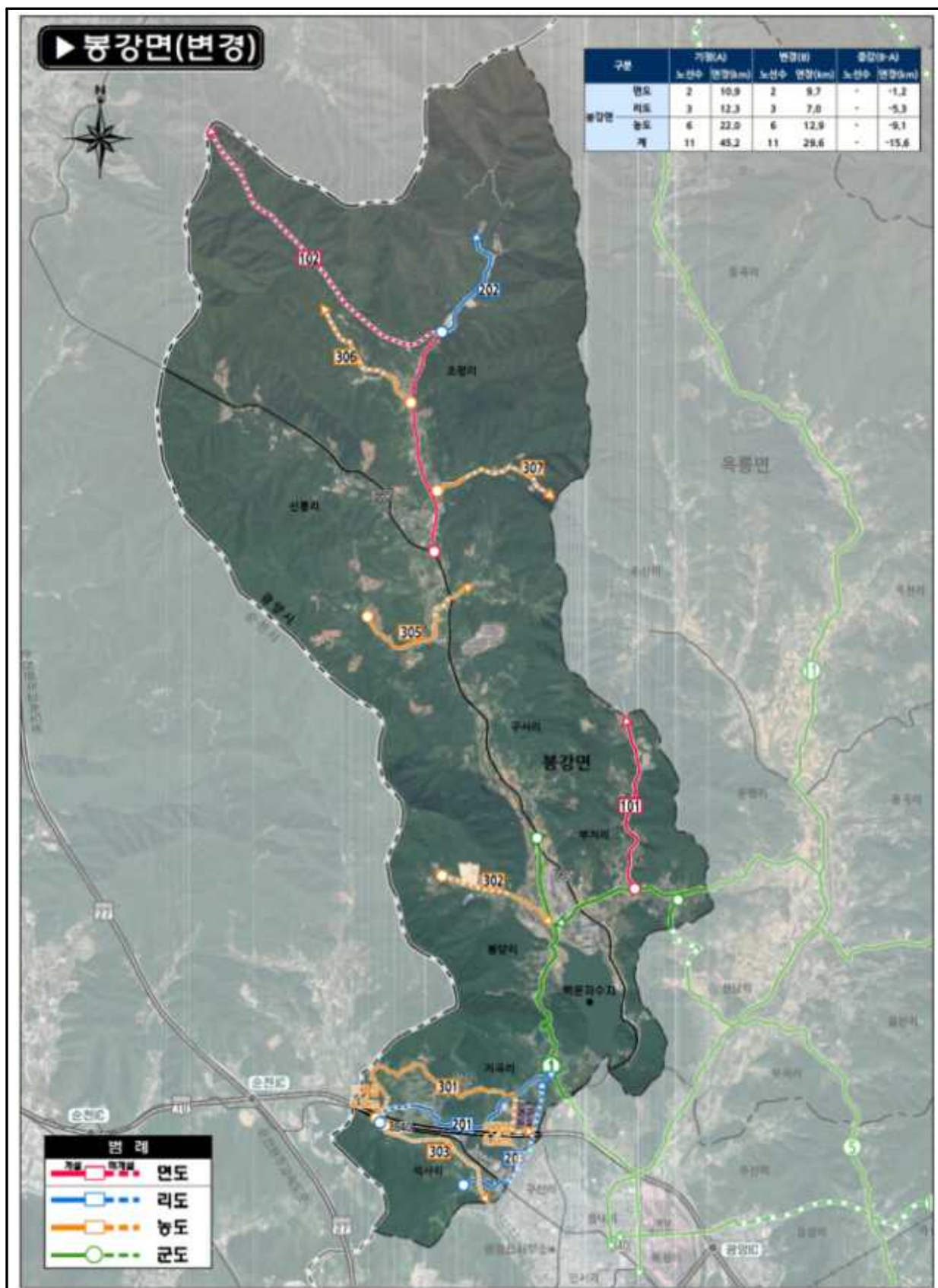
도로		노선명	노선 번호	연 장(km)				정비 구분	정비사유
				포장	비포장	미개설	합계		
면도 (2개)	기정	저양선	봉강101	2.5	—	—	2.5	변경없음	▷정비내용 없음.
	변경	저양선	봉강101	2.5	—	—	2.5		
	기정	신하선	봉강102	2.9	5.5	—	8.4	변경없음	▷정비내용 없음.
	변경	신하선	봉강204	3.0	4.2	—	7.2		
리도 (3개)	기정	마지선	봉강201	2.0	4.8	—	6.8	노선분할	▷기존 현황도로를 감안한 도로개설 실효성이 부족한 구간 노선축소(리도 201호선 중점 부분) — 지방도840호선과 시도1호선의 연결하는 리도201호선 기능 유지 ▷기존 리도201호선(구상천 남쪽)의 경우 리도기능 보다는 마을과 경작지등과의 연결기능을 담당하는 하는 농도로 위계 조정하여 정비함
	변경	마지선	봉강201	2.4	0.6	—	3.0		
		마지선	봉강303	—	2.0	—	2.0		
	기정	하성선	봉강202	0.5	1.4	—	1.9	변경없음	▷정비내용 없음.
	변경	하성선	봉강202	1.9	—	—	1.9		
	기정	명지선	봉강203	1.1	2.5	—	3.6	노선조정	▷기존 현황도로 및 주변여건을 고려한 노선조정
	변경	명지선	봉강203	0.6	1.5	—	2.1		



<표 1.1.4 - 6> 계속

도로		노선명	노선 번호	연 장(km)				정비 구분	정비사유
				포장	비포장	미개설	합계		
농도 (6개)	기정	객서선	봉강301	0.4	2.0	—	2.4	노선조정	▷현황도로 및 주변여건을 고려한 노선조정 및 시·중점 변경 － 기·중점 배열방법은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상의 기중점 배열방법인 남쪽에서 북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여 시·중점을 변경함
	변경	객서선	봉강301	2.8	—	0.9	3.7		
	기정	봉저선	봉강302	0.3	2.5	—	2.8	노선축소	▷현황도로를 고려(시도6호선 농지접근 역할 수행가능)한 노선축소
	변경	봉저선	봉강302	0.6	1.1	—	1.7		
	기정	구계선	봉강304	0.6	5.7	—	6.3	노선폐지	▷지방도 865호선은 남북축의 도로기능을 하며 개룡마을, 마시마을, 구서마을 등을 연결하며 농로 구계선의(봉강304) 역할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음
	변경	구계선	봉강304	—					
	기정	계덕선	봉강305	0.5	3.0	—	3.5	노선축소	▷기존 현황도로를 감안한 도로개설 실효성 부족구간 노선축소
	변경	계덕선	봉강305	1.2	0.5	0.2	1.9		
	기정	덕하선	봉강306	0.1	4.4	—	4.5	노선축소	▷지방도 865호선과 면도102호선이 농도 봉강306(덕하선)의 도로기능을 충분히 대체할 수 있으며, 이용수요대비 교량신설 필요지점 많아 비용 과다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노선을 축소함
	변경	덕하선	봉강306	0.6	1.0	—	1.6		
기정	부암선	봉강307	—	2.5	—	2.5	변경없음	▷정비내용 없음(노선연장 정정).	
변경	부암선	봉강307	—	2.0	—	2.0			





<그림 1.1.4 - 5> 광양시 농어촌도로 정비계획(봉강면)



다) 옥룡면

(1) 정비내용 종합

- 옥룡면의 농어촌도로는 당초 12개 노선중 3개 노선 폐지, 2개 노선 위계조정으로 총 9개 농어촌도로 노선으로 정비되었음.

<표 1.1.4 - 7> 농어촌도로 정비내용 종합(옥룡면)

구 분	당 초(A)		변 경(B)		증 감(B-A)	
	노선수	연장(km)	노선수	연장(km)	노선수	연장(km)
면도	1	1.4	1	1.5	-	0.1
리도	5	22.4	3	11.5	-2	-10.9
농도	6	19.7	5	12.9	-1	-6.8
소계	12	43.5	9	25.9	-3	-17.6

(2) 농어촌도로 정비사유 및 세부 정비내용

- 옥룡면 관내 총 12개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을 제시함.

<표 1.1.4 - 8> 농어촌도로 정비사유(옥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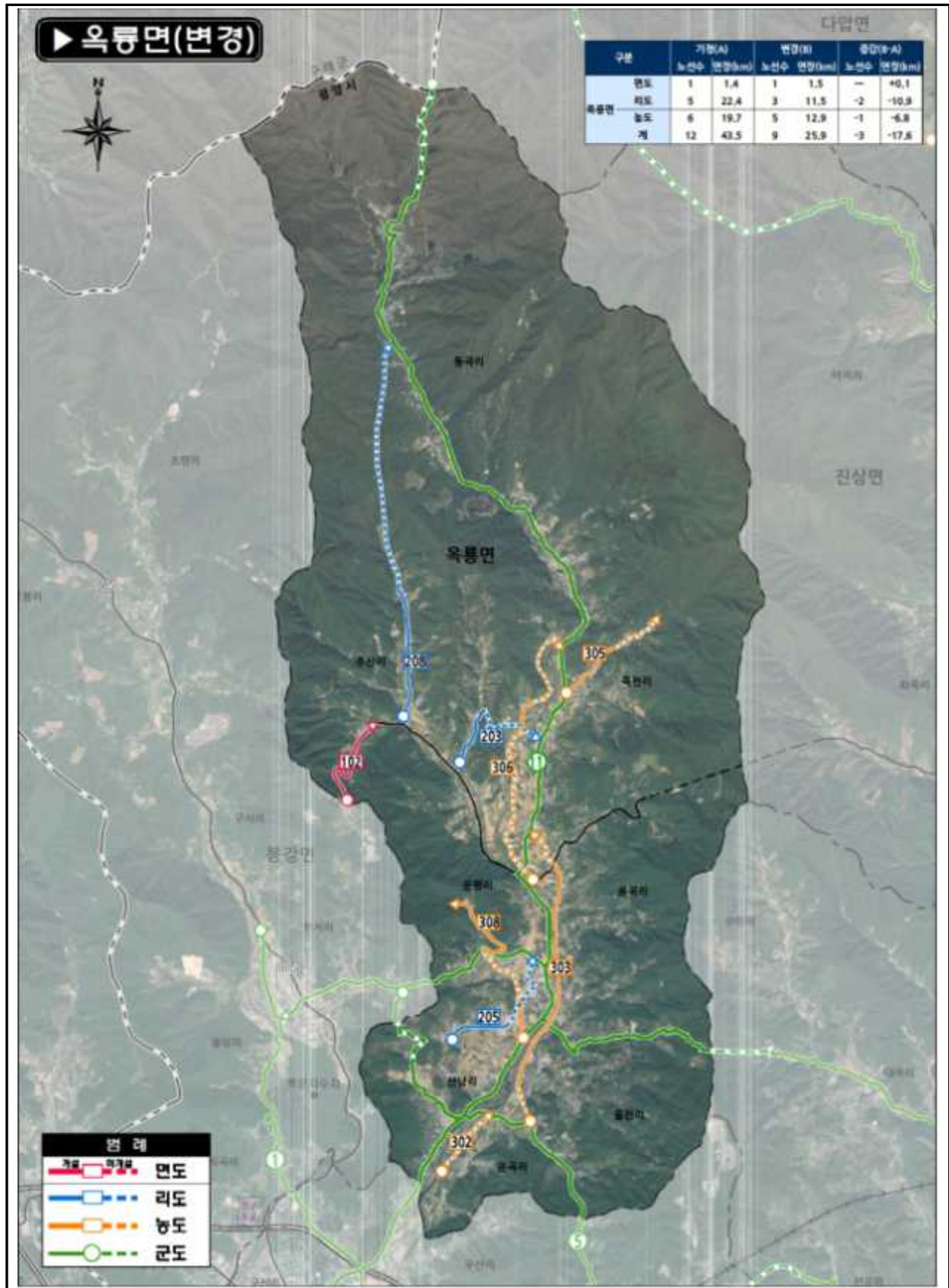
도로		노선명	노선 번호	연 장(km)				정비 구분	정비사유
				포장	비포장	미개설	합계		
면도 (1개)	기정	양저선	옥룡102	1.4	-	-	1.4	노선조정	▷노선연장 및 시종점 정정 - 기·종점 배열방법은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상의 기종점 배열방법인 남쪽에서 북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여 시·종점을 변경함.
	변경	양저선	옥룡102	1.5	-	-	1.5		
리도 (5개)	기정	재죽선	옥룡201	-	2.4	-	2.4	위계조정 및 노선축소	▷도로기능에 따른 위계조정 및 도시계획도로 중복에 따른 노선축소 - 도로의 기능상 은죽마을, 갈곡마을에서 경작지 등과 연결되는 농도에 기능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도로로 위계를 조정함. (리도 옥룡201 → 농도 옥룡302) - 기·종점 배열방법은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상의 기종점 배열방법인 남쪽에서 북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여 시·종점을 변경함.
	변경	재죽선	옥룡302	-	1.0	-	1.0		
	기정	월추선	옥룡202	2.9	5.4	-	8.3	위계조정 및 노선축소	▷광양동천 동측도로는 광양동천 동측의 경작지등과 주변마을을 연결하는 농도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리도에서 농도로 위계조정을 통해 정비함 (리도 옥룡202 → 농도 옥룡303) - 남북측의 도로기능은 광양동천 동측 군도11호선 (확포장계획 有 : 타당성조사 진행중)이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음.
	변경	월추선	옥룡303	3.0	1.0	-	4.0		



<표 1.1.4 - 8> 계속

도로		노선명	노선 번호	연 장(km)				정비 구분	정비사유
				포장	비포장	미개설	합계		
리도 (5개)	기정	비추선	옥룡203	0.6	1.9	-	2.5	노선조정	▷ 시도11호선과 지방도863호선의 연결기능을 수행하는 농어촌도로로 기존 현황도로 및 주변여건을 고려한 노선조정 (운암사 진입도로 활용) - 기·중점 배열방법은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상의 기중점 배열방법인 남쪽에서 북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여 시·중점을 변경함.
	변경	비추선	옥룡203	0.9	1.0	-	1.9		
	기정	울삼선	옥룡205	1.2	3.6	-	4.8	노선축소	▷ 도시계획(도로) 중복지정된 시중점 구간을 축소하고 현황도로를 감안한 노선축소 (중복지정을 축소하여 도로관리주체를 명확히 함)
	변경	울삼선	옥룡205	0.8	1.2	-	2.0		
	기정	추심선	옥룡208	1.2	3.2	-	4.4	노선조정	▷ 변경없음 (포장, 미포장 연장조정) - 옥룡면 의견 :군도11호선과의 연계성 및 옥룡면(백운산 자연휴양림 등)의 관광개발에 따른 접근성향상과 주말 교통량 분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노선임.
변경	추심선	옥룡208	1.9	3.2	-	5.1			
농도 (6개)	기정	떡백선	옥룡301	-	3.5	-	3.5	노선폐지	▷ 도로개설 실효성 없는 시점구간과 백운사 진입도로의 도로시설 규격(중단경사)이 농도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노선을 폐지하여 정비함.
	변경	떡백선	옥룡301	-					
	기정	내죽선	옥룡305	-	4.6	-	4.6	노선축소	▷ 지형(산지)제약으로 인한 도로개설의 실효성 부족한 구간을 제외하고 노선축소
	변경	내죽선	옥룡305	0.8	0.8	-	1.6		
	기정	추내선	옥룡306	0.2	3.5	-	3.7	노선조정	▷ 현황도로 및 주변여건을 고려한 노선조정
	변경	추내선	옥룡306	0.5	3.5	-	4.0		
	기정	삼외선	옥룡307	-	3.4	-	3.4	노선폐지	▷ 현재 지방도 863호선(백계로)이 농도 307호선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으므로 중복노선임. ▷ 이용수요에 비해 교량건설이 필요함에 따라 과다한 공사비용이 예상됨에 따라 폐지함.
	변경	삼외선	옥룡307	-					
	기정	하중선	옥룡308	0.6	1.3	-	1.9	노선조정	▷ 현황도로 및 주변여건을 고려한 노선조정
	변경	하중선	옥룡308	1.5	-	0.8	2.3		
	기정	산남선	옥룡309	-	2.6	-	2.6	노선폐지	▷ 시도5호선과, 시도11호선이 주변 경작지와 마을간을 연결하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어 농도 309호선과 중복으로 계획됨에 따라 노선 폐지함.
변경	산남선	옥룡309	-						





<그림 1.1.4 - 6> 광양시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옥룡면)



라) 옥곡면

(1) 정비내용 종합

- 옥곡면의 농어촌도로는 당초 13개 노선중 4개 노선 폐지, 2개 노선분할, 2개노선 위계조정으
로 총 13개 농어촌도로 노선으로 정비되었음.

<표 1.1.4 - 9> 농어촌도로 정비내용 종합(옥곡면)

구 분	당 초(A)		변 경(B)		증 감(B-A)	
	노선수	연장(km)	노선수	연장(km)	노선수	연장(km)
면도	3	15.2	3	7.8	-	-7.4
리도	3	13.9	4	10.0	-	-3.9
농도	7	24.1	6	7.7	-1	-16.4
소계	13	53.2	13	25.5	-1	-27.7

(2) 농어촌도로 정비사유 및 세부 정비내용

- 옥곡면 관내 총 13개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을 제시함.

<표 1.1.4 - 10> 농어촌도로 정비사유(옥곡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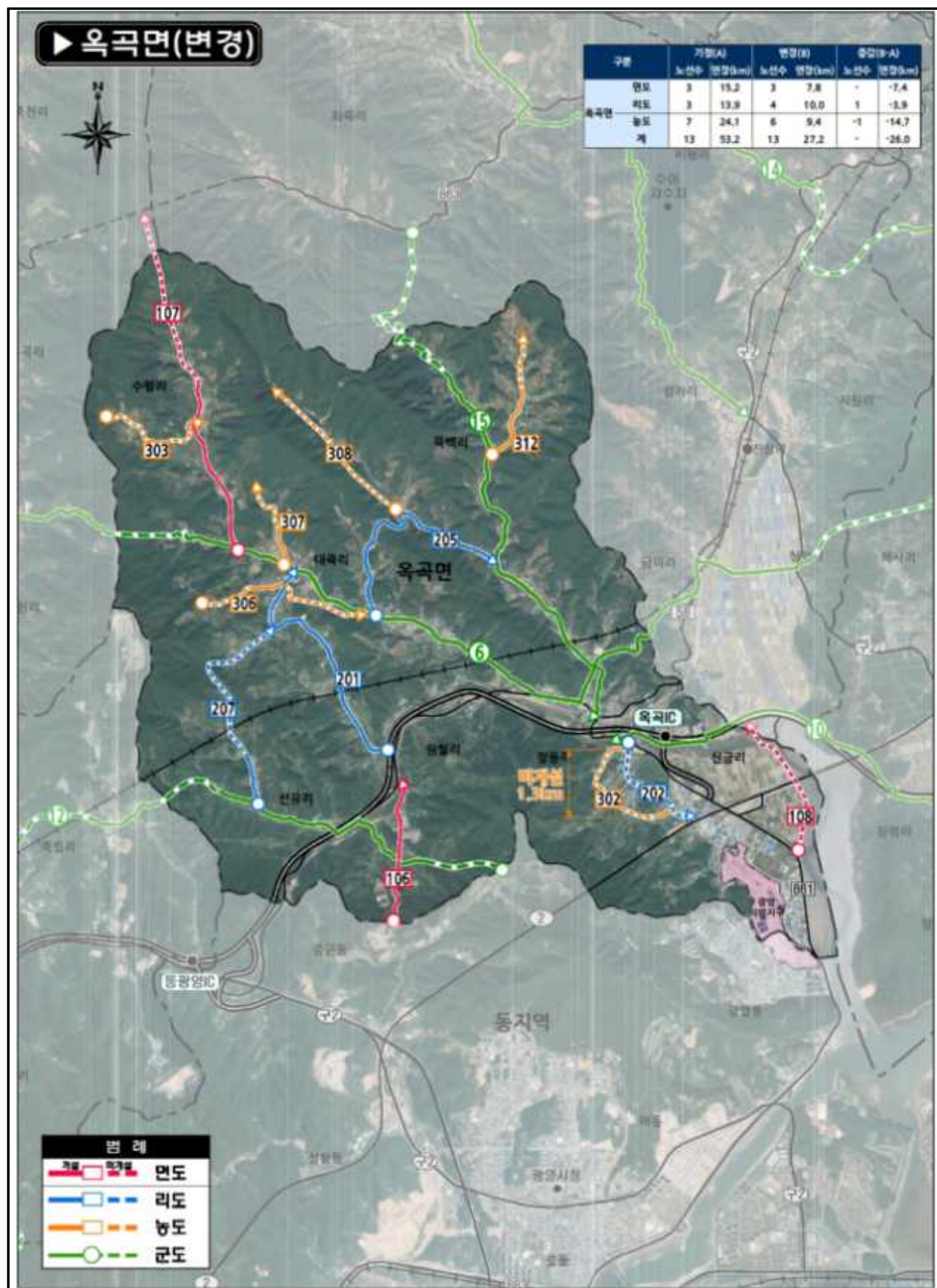
도로		노선명	노선 번호	연 장(km)				정비 구분	정비사유
				포장	비포장	미개설	합계		
면도 (3개)	기정	의장 선	옥곡105	3.2	—	—	3.2	노선폐지	▷옥곡 105호선 면도는 광영·의암지구 도시 개발사업 지구내 노선 일부가 포함되며, 도시계획도로와 중복노선으로 노선폐지
	변경	저양 선	옥곡105	—					
	기정	오수 선	옥곡107	7.4	2.1	—	9.5	위계조정 및 노선분할	▷현황도로 규모 및 기능을 감안한 노선변 경 및 분할지정 (면도 옥곡107 → 면도 : 옥곡106, 옥곡 107 리도 : 옥곡201)
	변경	정오 선	옥곡106	1.7	—	—	1.7		
		용죽 선	옥곡201	3.1	—	—	3.1		
		백수 선	옥곡107	2.2	0.7	1.4	4.3		
	기정	의금 선	옥곡108	—	2.5	—	2.5	변경없음	▷정비내용 없음. — 현재 진행중 (설계중)
변경	의금 선	옥곡108	—	1.6	0.2	1.8			
리도 (3개)	기정	신목 선	옥곡205	2.9	2.2	—	5.1	노선축소	▷시도6호선과 시도15호선을 연결하는 도로 기능을 수행 ▷도로개설 실효성 부족구간 노선축소 (중복 구간 제외) — 삼존~오동 확포장공사 준공
	변경	신목 선	옥곡205	3.1	—	—	3.1		
	기정	의금 선	옥곡206	0.5	3.5	—	4.0	노선폐지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 및 주변 여건 변화에 따른 노선의 실효성 저하로 노선을 폐지함.
	변경	의금 선	옥곡206	—					
	기정	중덕 선	옥곡207	0.7	4.1	—	4.8	노선조정	▷현황도로 및 주변여건을 고려한 노선조 정 (중점변경)
	변경	중덕 선	옥곡207	0.6	1.9	—	2.5		



<표 1.1.4 - 10> 계속

도로		노선명	노선 번호	연 장(km)				정비 구분	정비사유
				포장	비포장	미개설	합계		
농도 (7개)	기정	장의선	옥곡302	1.3	5.7	—	7.0	노선축소 및 위계조정	▷ 기존 현황도로를 감안한 도로개설 실효성 부족구간(마을안길) 노선축소 ▷ 주변여건 변화에(국도2호선 신금IC건설 등) 따른 노선의 실효성 저하구간의 노선 축소 ▷ 긴급차량(소방)의 마을 접근 개선을 위하여 차량교통가능하도록 리도로 격상하여 조정함. (농도 옥곡302 → 리도 : 옥곡202, 농로 302)
	변경	장의선	옥곡202	—	1.3	—	1.3		
		신장선	옥곡302	0.4	—	1.3	1.7		
	기정	백죽선	옥곡306	0.6	1.0	—	1.6	노선조정	▷ 기존 현황도로를 감안한 도로개설 실효성 부족구간(군도 6호선까지 접속)을 축소하고 ▷ 금번 옥곡207호선 노선축소에 따른 축소부분을 옥곡306호선과 연계하여 정비계획함.
	변경	백죽선	옥곡306	0.4	1.9	—	2.3		
	기정	죽수선	옥곡307	1.0	3.4	—	4.4	노선분할	▷ 기존 옥곡307호선은 수평천(교량신설 필요)을 횡단하여 죽양마을, 백양마을에서 수평마을까지 연결하는 농도노선으로 계획되었으나 면도 옥곡107호선이 마을간의 연결기능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으므로 기존 농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노선을 분할계획 하였음
	변경	죽수선	옥곡307	0.5	0.5	—	1.0		
		수수선	옥곡303	0.2	1.2	—	1.4		
	기정	먹방선	옥곡308	—	1.5	—	1.5	변경없음	▷정비내용 없음.
	변경	먹방선	옥곡308	—	1.5	—	1.5		
	기정	하금선	옥곡309	1.7	4.4	—	6.1	노선폐지	▷동서축의 기능을 하는 도로가 다수 존재하고 중군~진상 국지도58호선도 계획중에 있으므로 농어촌도로 옥곡309호선의 도로개설 실효성은 현저히 떨어짐.
	변경	하금선	옥곡309	—					
	기정	용곡선	옥곡310	—	2.0	—	2.0	노선폐지	▷지형(산지)제약과 철도건설에 따른 여건변화에 따라 도로개설 실효성이 떨어지며 이용수요가 매우 적을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노선을 폐지함.
	변경	용곡선	옥곡310	—					
	기정	솔백선	옥곡312	0.5	1.0	—	1.5	변경없음	▷정비내용 없음(포장, 미포장 연장조정).
	변경	솔백선	옥곡312	0.8	0.7	—	1.5		





<그림 1.1.4 - 7> 광양시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옥곡면)

마) 진상면

(1) 정비내용 종합

- 진상면의 농어촌도로는 당초 12개 노선중 3개 노선 폐지, 2개 노선 위계조정으로 총 9개 농어촌도로 노선으로 정비되었음.

<표 1.1.4 - 11> 농어촌도로 정비내용 종합(진상면)

구 분	당 초(A)		변 경(B)		증 감(B-A)	
	노선수	연장(km)	노선수	연장(km)	노선수	연장(km)
면도	2	7.7	2	6.7	-	-1.0
리도	4	13.1	1	1.8	-3	-11.3
농도	6	19.5	6	15.3	-	-4.2
소계	12	40.3	9	23.8	-3	-16.5

(2) 농어촌도로 정비사유 및 세부 정비내용

- 진상면 관내 총 12개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을 제시함.

<표 1.1.4 - 12> 농어촌도로 정비사유(진상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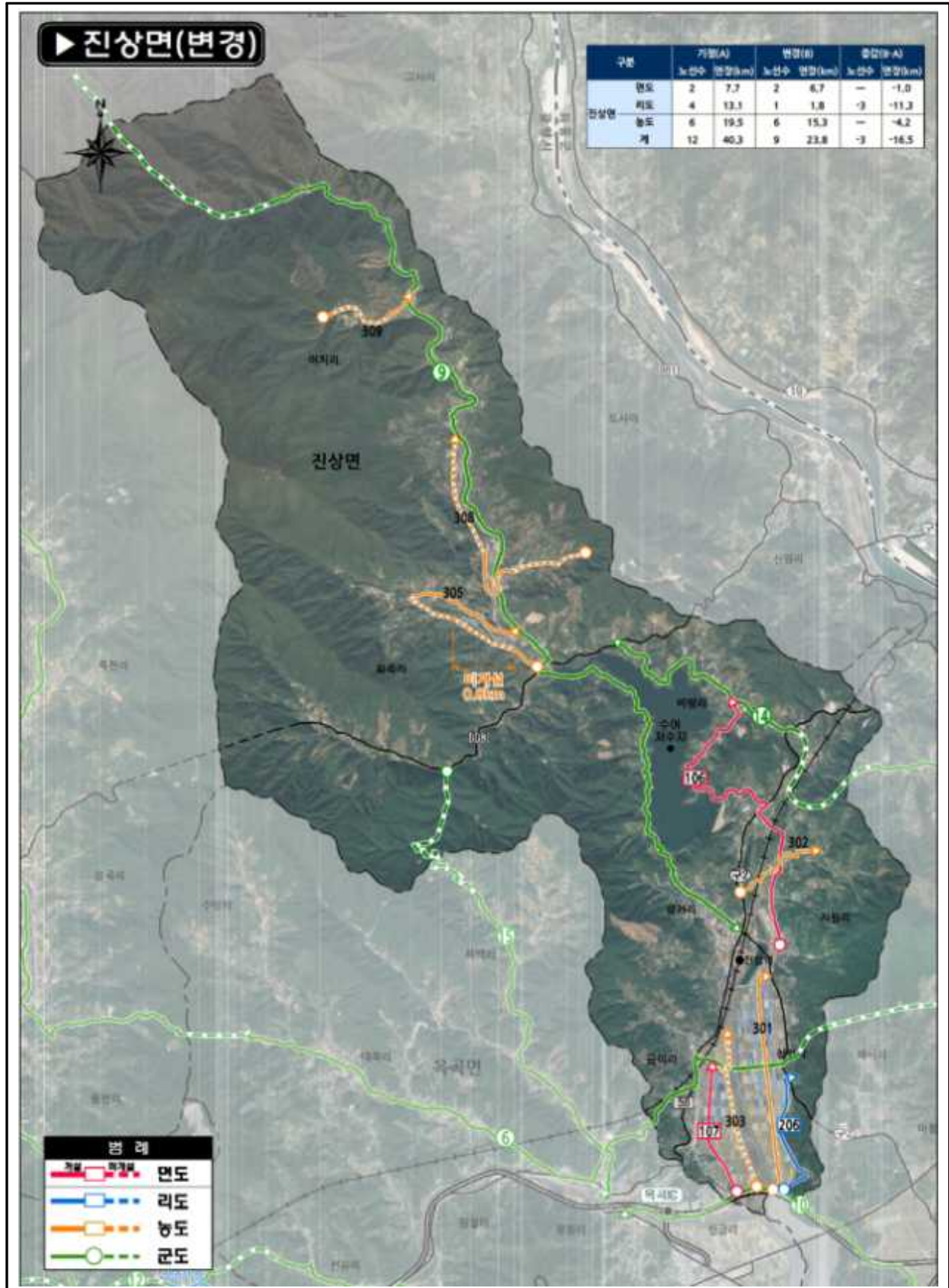
도로		노선명	노선 번호	연 장(km)				정비 구분	정비사유
				포장	비포장	미개설	합계		
면도 (2개))	기정	지비선	진상106	5.6	—	—	5.6	변경없음	▷정비내용 없음 (노선연장 정정).
	변경	지비선	진상106	4.9	—	—	4.9		
	기정	금목선	진상107	2.1	—	—	2.1	변경없음	▷정비내용 없음 (노선연장 정정).
	변경	금목선	진상107	1.8	—	—	1.8		
리도 (4개))	기정	신구선	진상202	—	5.0	—	5.0	위계조정	▷ 진상202호선은 도로의 기능상 리도의 기능보다 황죽리 구황마을 주변 마을안길과 농로의 기능에 가까워 위계조정을 통한 노선정비를 함. (리도 진상202 → 농도 진상305) ▷ 신구선 도로확포장공사(L=1.54km) 진행중 : 주변 펜션 및 전원주택 등 증가로 도로 이용수요 증가에 따른 확포장공사
	변경	신구선	진상305	2.0	0.8	0.8	3.6		
	기정	섬방선	진상203	0.2	2.6	—	2.8	위계조정	▷ 지형제약으로 인한 도로개설 실효성 부족구간을 제외하고 일부구간은 리도에서 농도로 위계조정 (리도 진상203 → 농도 진상302)
	변경	섬방선	진상302	1.4	—	—	1.4		
	기정	상삼선	진상206	0.8	3.0	—	3.8	노선조정 및 축소	▷ 도로개설 실효성이 부족한 구간 (수어천 횡단부분 : 교량신설필요) 노선축소 하고 기존 현황도로를 감안하여 시도10호선고 구국도2호선을 연결하는 기능의 도로로 정비함.
	변경	상삼선	진상206	1.8	—	—	1.8		
	기정	금신선	진상207	—	1.5	—	1.5	노선폐지	▷ 현황도로를 감안하여 마을안길로 관리가 가능하며 동일한 연결기능의 도로계획이 다수 존재하여 노선을 폐지함.
	변경	금신선	진상207	—					



<표 1.1.4 - 12> 계속

도로		노선명	노선 번호	연 장(km)				정비 구분	정비사유
				포장	비포장	미개설	합계		
농도 (6개)	기정	지삼선	진상301	3.5	3.8	－	7.3	노선축소	▷ 현황도로 및 주변여건을 고려한 노선축소 및 시·종점 변경 － 기·종점 배열방법은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상의 기종점 배열방법인 남쪽에서 북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여 시·종점을 변경함.
	변경	지삼선	진상301	2.9	－	－	2.9		
	기정	금심선	진상303	－	3.9	－	3.9	노선축소	▷ 진상303(금심선)의 경우 지형의 제약(철도의 횡단이 어려움)으로 인한 도로개설 실효성 부족한 부분을 노선에서 제외하여 축소함.
	변경	금심선	진상303	－	2.3	－	2.3		
	기정	섬이선	진상304	0.4	2.7	－	3.1	노선폐지	▷ 현황도로 및 주변여건(국지도건설사업, 철도 횡단등)을 고려하여 노선정비를 검토한 결과 도시계획(도로)중복 구간과 마을안길로 도로관리기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어 노선을 폐지함.
	변경	섬이선	진상304	－					
	기정	웅동선	진상306	0.3	0.7	－	1.0	노선폐지	▷ 지형(산지)제약으로 인한 도로개설 실효성 부족으로 노선폐지 － 임도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변경	웅동선	진상306	－					
	기정	어지선	진상308	0.7	2.2	－	2.9	변경없음	▷ 정비내용 없음(연장 조정).
	변경	어지선	진상308	1.3	1.0	1.5	3.8		
	기정	외회선	진상309	－	1.3	－	1.3	변경없음	▷ 정비내용 없음.
	변경	외회선	진상309	0.3	1.0	－	1.3		





<그림 1.1.4 - 8> 광양시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진상면)



바) 진월면

(1) 정비내용 종합

- 진월면의 농어촌도로는 당초 13개 노선중 1개 노선 폐지, 4개 노선 위계조정으로 총 13개 농어촌도로 노선으로 정비되었음.

<표 1.1.4 - 13> 농어촌도로 정비내용 종합(진월면)

구 분	당 초(A)		변 경(B)		증 감(B-A)	
	노선수	연장(km)	노선수	연장(km)	노선수	연장(km)
면도	2	13.8	1	3.5	-1	-10.3
리도	7	31.4	4	19.5	-3	-11.9
농도	4	12.9	8	20.1	+4	7.2
소계	13	58.1	13	43.1	0	-15

(2) 농어촌도로 정비사유 및 세부 정비내용

- 진월면 관내 총 13개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을 제시함.

<표 1.1.4 - 14> 농어촌도로 정비사유(진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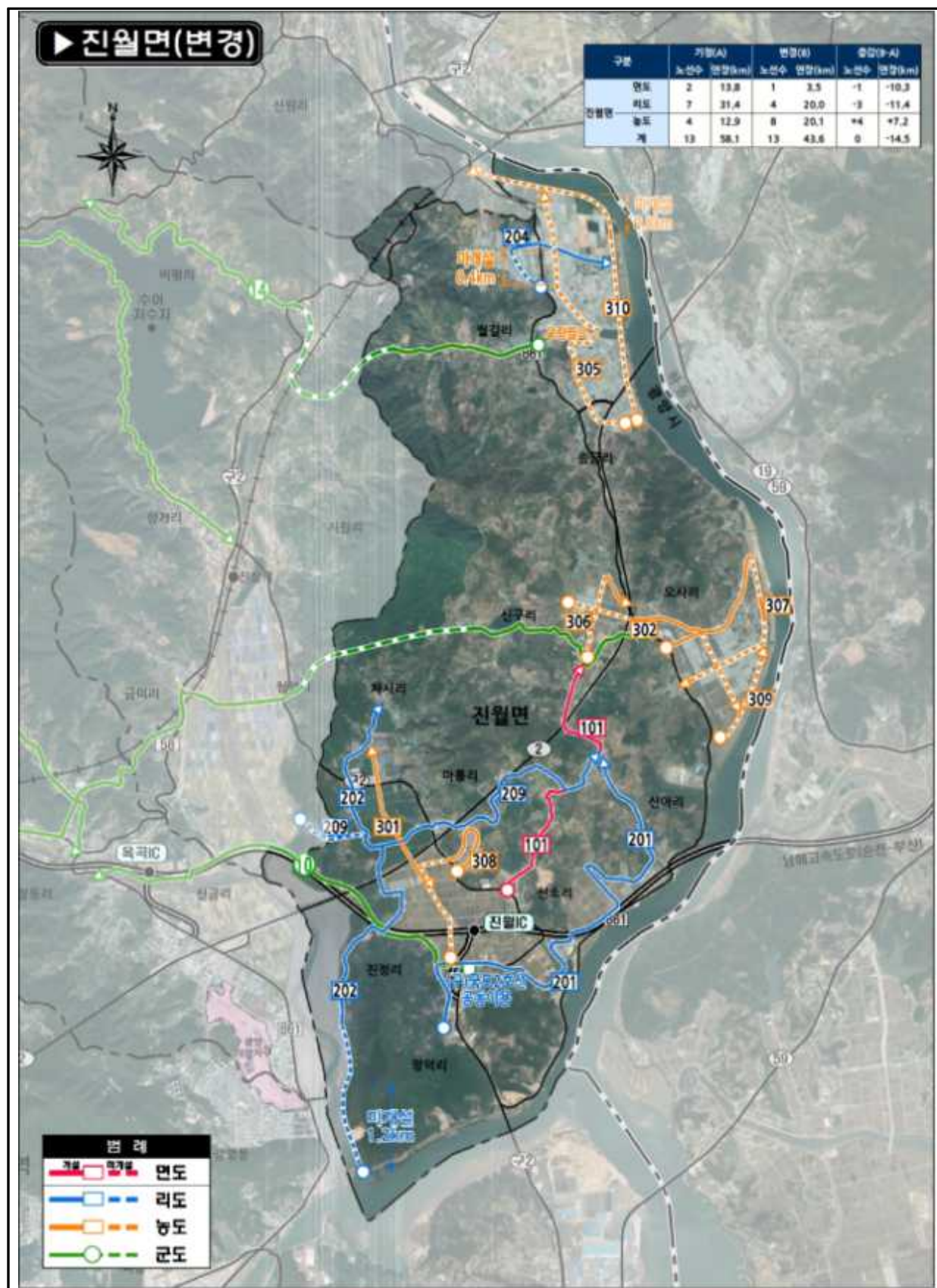
도로		노선명	노선 번호	연 장(km)				정비 구분	정비사유
				포장	비포장	미개설	합계		
면도 (2개)	기정	중구선	진월101	1.4	3.8	—	5.2	노선조정 및 축소	▷ 현황도로 및 주변여건을 고려한 노선조정 및 시·종점 변경. － (구)국도2호선과 시도6호선을 연결하는 남북도로의 기능을 수행하는 도로
	변경	중구선	진월101	3.5	—	—	3.5		
	기정	오신선	진월103	—	8.6	—	8.6	위계조정 및 노선축소	▷ 면도 진월103호선의 노선위치에 개설되어있는 도로는 법정도로가 아닌 섬진강 제방관리용도로 로 일반차량의 출입을 제한함으로 면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도로이며 일부구간은 도시계획도로와 중복됨 에 따라, 제방관리용도로와 바로 접하고 있는 도로를 농도로 지정하여 정비함. (면도 진월310 → 농도 진월309, 농도 진월310)
	변경	오사선	진월309	1.1	—	—	1.1		
	변경	금답선	진월310	—	2.9	0.8	3.7		
리도 (7개)	기정	외신선	진월201	4.9	1.9	—	6.8	노선조정	▷ 기존 현황도로 및 지형제약에 의한 도로개설 실효성 부족구간을 제외 － 실효성 부족구간(망덕포구~시점부)
	변경	외신선	진월201	6.7	—	—	6.7		
	기정	선마선	진월202	4.0	3.6	—	7.6	노선조정	▷ 공사중인 지방도861호선(진월 광영간)와 연계하여 지방도861호선과 (구)국도 2호선간 연결기능을 담당하도록 정비함. ▷ 현황도로와 관련계획(지방도 건설사업)을 고려하여 시종점을 변경함.
	변경	선마선	진월202	4.7	0.5	1.2	6.4		
	기정	금중선	진월204	1.4	3.9	—	5.3	노선조정 및 축소	• 현황도로 및 주변여건을 고려한 노선조정 및 시·종점부 변경
	변경	금중선	진월204	1.2	0.7	—	1.9		



<표 1.1.4 - 14> 계속

도로		노선명	노선 번호	연 장(km)				정비 구분	정비사유
				포장	비포장	미개설	합계		
리도 (7개)	기정	구신선	진월207	0.8	1.2	-	2.0	위계조정	▷ 현황도로 및 주변여건을 고려한 노선조정 - 리도의 도로기능 보다 주변 경장지에서 마을간의 연결하는 농도의 기능에 적합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계를 조정하여 정비함 - 기·종점 배열방법은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상의 기종점 배열방법인 남쪽에서 북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여 시·종점을 변경함. (리도 진월207호선 → 농도 진월306호선)
	변경	구신선	진월306	1.4	-	-	1.4		
	기정	신진선	진월209	2.0	1.8	-	3.8	노선조정	▷ 현황도로를 감안한 노선조정 및 시·종점 변경 - 기·종점 배열방법은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상의 기종점 배열방법인 남쪽에서 북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여 시·종점을 변경함.
	변경	신진선	진월209	3.8	0.7	-	4.5		
	기정	중항선	진월210	2.0	2.5	-	4.5	위계조정 및 노선축소	▷ 현황도로 및 주변여건 변화(국도2호선 건설)에 따라 노선의 조정이 필요하며 도로의 기능상 중산마을, 용소마을에서 주변 경작지로의 이동을 하는 농로의 기능에 적합한 노선으로 판단되어 위계조정으로 정비함. (리도 진월210호선 → 농도 진월308호선) - 시점부 도시계획(도로) 중복 구간을 제외하여 노선을 축소함.
	변경	중항선	진월308	1.1	0.5	-	1.6		
	기정	오사선	진월211	1.4	-	-	1.4	위계조정 및 노선병합	▷ 리도 진월211호선의 현황도로 위치와 기능을 고려하여 리도의 역할 보다 진월군 오사리의 경작지와 주변마을(오추마을, 섬진강끝들마을, 사평마을)을 연결하는 농도의 기능에 적합함. ▷ 따라서, 농도 303선을 폐지하고 리도 211호선의 위계조정을 통하여 농도 307호선으로 통합하여 정비함. (리도 진월211호선 → 농도 진월307호선)
	변경	오사선	진월307	1.7	1.8	-	3.5		
농도 (4개)	기정	내마선	진월301	1.1	1.9	-	3.0	노선조정	▷ 현황도로 폭원을 감안한 노선조정 및 연장 조정
	변경	내마선	진월301	1.7	0.9	-	2.6		
	기정	구오선	진월302	0.8	2.9	-	3.7	노선축소	▷ 지형(산지)제약으로 인한 도로개설 실효성 및 이용수요 부족구간 노선축소
	변경	구오선	진월302	0.8	1.7	-	2.5		
	기정	오사선	진월303	-	2.4	-	2.4	노선폐지	▷ 리도 진월211호선의 위계조정과 농도 진월303호선 노선폐지 후 병합을 통해 새로운 농도 진월307호선을 정비함. (리도 진월211호선 정비내용 참조)
	변경	오사선	진월303	-					
	기정	금중선	진월305	-	3.8	-	3.8	노선조정	▷ 현황도로의 여건을 고려하여 산지훼손(남산)하지 않으며 단구간의 교량건설(L=50m)을 통해 경작지로의 이동이 가능한 노선으로 조정하여 정비함.
	변경	금중선	진월305	-	3.2	0.5	3.7		





<그림 1.1.4 - 9> 광양시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진월면)

사) 다압면

(1) 정비내용 종합

- 다압면의 농어촌도로는 당초 14개 노선중 3개 노선 폐지, 4개 노선 위계조정으로 총 12개 농어촌도로 노선으로 정비되었음.

<표 1.1.4 - 15> 농어촌도로 정비내용 종합(다압면)

구 분	당 초(A)		변 경(B)		증 감(B-A)	
	노선수	연장(km)	노선수	연장(km)	노선수	연장(km)
면도	1	5.6	-	-	-1	-5.6
리도	5	11.5	3	7.6	-2	-3.9
농도	8	29.3	9	15.9	+1	-13.4
소계	14	46.4	12	23.5	-2	-22.9

(2) 농어촌도로 정비사유 및 세부 정비내용

- 다압면 관내 총 14개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을 제시함.

<표 1.1.4 - 16> 농어촌도로 정비사유(다압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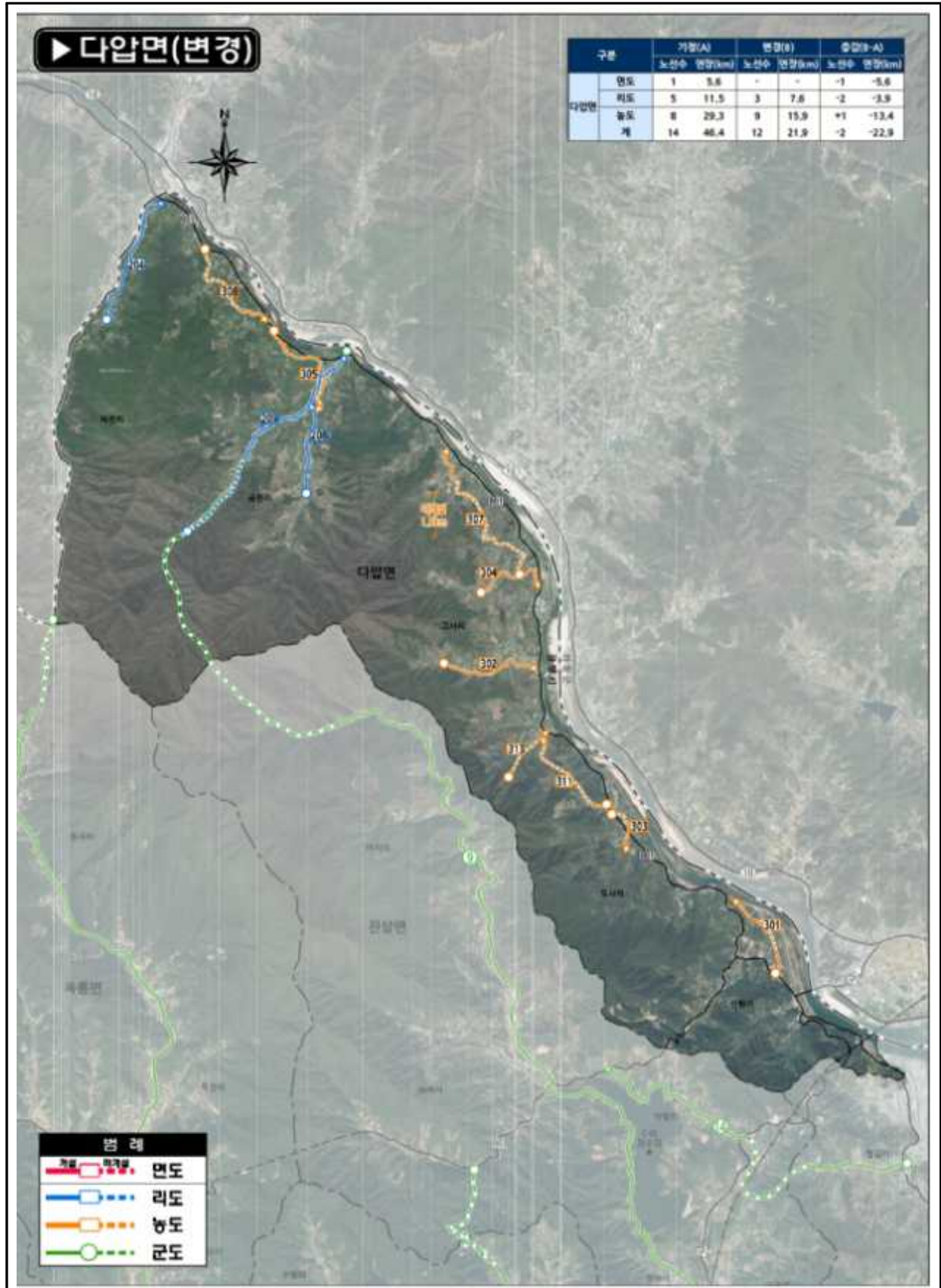
도로		노선명	노선 번호	연 장(km)				정비 구분	정비사유
				포장	비포장	미개설	합계		
군도 일부	기 정	군도	9호선	-				위계조정	▷ 다압면에 위치한 군도9호선의 조정(일부구간폐지)에 따라 서동마을에서 평촌마을을 연결하는 도로(대청길)를 리도로 격하하여 정비함. (군도9호선 일부 → 리도 다압209)
	변 경	서평선	다압209	2.6	1.6	-	4.2		
면도 (1개)	기 정	신소선	다압102	5.6	-	-	5.6	노선폐지	▷ 면도 다압102호선의 섬진강 서측에 개설되어있는 도로는 법정도로가 아닌 섬진강 제방관리용도로 로 일반차량의 출입을 제한함으로 면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노선폐지함.
	변 경	신소선	다압102	-					
리도 (5개)	기 정	고사선	다압201	0.8	0.8	-	1.6	위계조정 및 노선조정	▷ 기존 현황도로를 감안하여 리도 다압201호선을 검토한 결과 도로의 기능상 농도에 역할에 적합한 노선으로 판단되어 위계조정을 통하여 정비함. (리도 다압201 → 농도 다압302호선) - 기·종점 배열방법은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상의 기종점 배열방법인 남쪽에서 북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여 시·종점을 변경함.
	변 경	고사선	다압302	1.6	-	-	1.6		
	기 정	골항선	다압202	2.4	-	-	2.4	위계조정	▷ 도로기능상 농도에 역할에 적합한 노선으로 판단되어 위계조정을 통하여 정비함. (리도 다압202 → 농도 다압304호선) - 기·종점 배열방법은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상의 기종점 배열방법인 남쪽에서 북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여 시·종점을 변경함.
	변 경	골항선	다압304	1.5	-	-	1.5		



<표 1.1.4 - 16> 계속

도로		노선명	노선 번호	연 장(km)				정비 구분	정비사유
				포장	비포장	미개설	합계		
리도 (5개)	기정	하중선	다압204	-	3.3	-	3.3	노선축소	▷ 기존 현황도로를 감안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로관련계획에 따라 노선을 축소하여 정비함. - 다압 하천리 확포장공사 반영(L=1.9, B=6.5m) - 기·중점 배열방법은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상의 기중점 배열방법인 남쪽에서 북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여 사·중점을 변경함.
	변경	하중선	다압204	1.9	-	-	1.9		
	기정	직평선	다압206	1.3	1.2	-	2.5	위계조정	▷ 도로기능상 농도에 역할에 적합한 노선으로 판단되어 위계조정을 통하여 정비함. (리도 다압206 → 농도 다압305호선)
	변경	직평선	다압305	1.8	0.5	-	2.3		
	기정	괴동선	다압208	1.5	0.5	-	1.7	노선조정	▷ 현황도로를 감안한 노선연장 조정 및 노선번호 수정 - 기·중점 배열방법은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상의 기중점 배열방법인 남쪽에서 북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여 사·중점을 변경함.
	변경	괴동선	다압208	1.5	-	-	1.5		
농도 (8개)	기정	원동선	다압301	3.4	-	-	3.4	노선축소	▷ 지형(산지)제약으로 인한 도로개설 실효성 부족구간은 제외하여 노선을 축소함. - 노선축소 구간(다압면 신원리 원동마을)은 지방도 861호선으로 도로기능 대체가능
	변경	원동선	다압301	1.0	0.5	-	1.5		
	기정	다사선	다압303	1.4	1.3	-	2.7	노선축소	▷ 도로현황 여건을 고려하여 도로개설의 실효성이 부족한 노선을 축소하여 정비함.
	변경	다사선	다압303	0.4	0.4	-	0.8		
	기정	고사선	다압306	-	2.0	-	2.0	노선폐지	▷ 섬진강 서측에 개설되어있는 도로는 법정 도로가 아닌 섬진강 제방관리용도로 로 일반차량의 출입을 제한함으로 농도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으므로 노선폐지함.
	변경	고사선	다압306	-					
	기정	유새선	다압307	-	3.9	-	3.9	노선축소	▷ 기존 현황도로(마을안길)을 고려하여 중점을 변경하여 노선을 축소함.
	변경	유새선	다압307	0.7	1.4	1.0	3.1		
	기정	동염선	다압308	1.2	6.8	-	8.0	노선축소	▷ 지형(산지)제약과 현황도로 여건을 고려하여 도로개설의 실효성이 부족한 구간을 조정하여 노선을 축소하여 정비함.
	변경	동염선	다압308	0.5	1.5	-	2.0		
	기정	소관선	다압311	-	-	4.0	4.0	노선조정 및 축소	▷ 기존 현황도로 및 주변여건을 고려하여 도로개설의 실효성이 부족한 노선을 조정하고 축소함.
	변경	소관선	다압311	0.2	-	1.6	1.8		
	기정	외소선	다압312	-	-	4.0	4.0	노선폐지	▷ 지형(산지)제약으로 인한 현황 여건을 고려하여 이용수요와 도로개설의 실효성이 부족한 다사선을 폐지함. - 농도 다압312호선의 도로기능은 동일방향의 지방도 861호선이 대체 가능함, 지방도 861호선과 마을간의 연결은 마을안길을 통해 관리함.
	변경	외소선	다압312	-					
기정	관동선	다압313	-	1.3	-	1.3	변경없음	▷ 정비내용 없음. - 기·중점 배열방법은 「고속국도 등 도로 노선번호 및 노선명 관리지침」 상의 기중점 배열방법인 남쪽에서 북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하여 사·중점을 변경함.	
변경	관동선	다압313	0.1	1.2	-	1.3			





<그림 1.1.4 - 10> 광양시 농어촌도로 정비계획(다압면)



1.2 지역개황

- 계획노선이 위치한 광양시의 환경관련 주요 분포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1.2 - 1> 환경 관련 지구·지역 지정 현황

환경관련 지역·지구	광양시	비 고
야생생물보호구역	○	■ 4개소, (광양읍·봉강면·중군동·진상면)
수변구역	○	■ 1개소, (영산강·섬진강 수계)
생태·경관보전지역	○	■ 1개소, (광양백운산)
생태계변화관찰지역	○	■ 1개소, (백운산)
특별관리해역	○	■ 1개소, (광양만 특별관리해역)
겨울철조류동시센서스지역	○	■ 2개소, ((광양만, 갈사만), (섬진강하구, 수어천하류))

<표 1.2 - 2> 환경관련입지 분포현황

구 분		광양시
환경관련 지구·지역 지정현황	야생생물보호구역	○
	수변구역	○
	생태경관보전지역	○
	생태계변화관찰지역	○
	특별관리해역	○
	겨울철조류동시센서스지역	○
	백두대간보호지역	×
	수산자원보호구역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
	습지보호구역및람사르습지지역	×
	상수원보호구역	×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
	환경보전해역	×
환경 피해 유발시설물	산업단지	5개소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466개소
주요 보호 대상시설물	문화재	27점
	정수장	2개소

주) “○” 분포, “×” 미분포, 미해당을 의미함.



1.3 환경보전 목표

-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 및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환경부고시 제2023-72호, 2023. 04. 13.」 제7조의2에 따라 고려되어야 할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함.
- 본 계획의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적 특성, 예상되는 환경영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세부 목표는 현황조사 및 평가결과를 토대로 구체화할 계획임.
- 본 계획은 농어촌도로 기본 및 정비계획으로 계획수립에 따른 환경영향에 대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함.

<표 1.3 - 1>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목표 설정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발기본계획)		환경보전목표	사유
1) 계획의 적정성	■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계획의 목표 및 적합성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및 부 합성 검토	■ 국가환경종합계획 등의 비전 과 목표에 준한 환경계획 수 립
	■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자연환경보전, 지형 및 생태 축 보전, 자연경관 및 수환 경 보전 등의 평가지표 검토	■ 대안별 비교, 검토시 설정한 평가지표 타당성 확인
2)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 생물다양성·서식지보전	■ 생태·자연도에서 설정한 기준 - 보전대상 : 1등급 - 목표설정 : 절대 보전 ■ 법정 보호종 - 보전대상 : 법정보호종 및 서식지 - 목표설정 : 절대 보전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 목표설정 : 자연환경자산 보호	■ 생태환경이 양호한 지역 보 전을 위한 계획기간 선정 ■ 주요 법정보호종 서식여부 확인 및 보전대책 수립 ■ 계획수립으로 인한 자연환경 자산 영향 최소화
	■ 지형 및 생태축 보전	■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 보전대상 : 경관, 학술, 문화 적 등 가치가 있는 지형 - 목표설정 : 절대, 상태보전 ■ 절·성토 비탈면 발생구간 - 보전대상 : 지형변화 구간 - 목표설정 : 상대 보전	■ 경관적, 학술적, 문화적, 역사 적, 예술적으로 보전이 필요 한 지형지질 및 습지보호지 역, 자연공원 보전대책 수립 필요 ■ 본 지형훼손 저감 및 비탈면 등 안정성 확보



<표 1.3 - 1> 계속

전략환경영향평가 (개발기본계획)		환경보전목표	사 유
2) 입지의 타당성			
자연환경의 보전	■ 주변 경관에 미치는 영향	■ 산림경관 및 수경관 등 - 목표설정 : 경관자원보전	■ 공사 전 친환경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최대한 주변 환경과 조화된 경관을 유지
	■ 수환경의 보전	■ 수질 공사시 환경보전목표 - 환경정책기본법 : 생활환경 기준(하천) ■ 해양환경 생태기반 등급 - 해양환경기준(WQI)	■ 공사시 주변 수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한 목표기준 설정
생활환경의 안정성	■ 환경기준의 부합성	■ 대기질 공사시 환경기준 - 환경정책기본법 : 대기환경기준	■ 공사시 지역주민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한 목표기준 설정
		■ 토양오염 “토양환경보전법” - 목표기준 : 지목별 오염도 - 토양오염우려기준 만족	■ 공사시 토양의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표기준 설정
		■ 공사시 소음진동 기준 - 관련규정 : 소음진동관리법, 환경분쟁조정법 사례 등 ■ 운영시 소음 기준 - 관련규정 : 환경정책기본법 - 목표설정 : 적용대상지역별	■ 공사시 지역주민 생활환경 보전 및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한 목표 기준 설정 ■ 운영시 도로변 지역 소음환경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목표기준 설정
	■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 공사시 위탁처리	■ 적정 폐기물처리계획 수립
사회·경제 환경의 조화성	■ 친환경적 토지이용	■ 생태·자연도에서 설정한 기준 - 보전대상 : 1등급 - 목표설정 : 상태 보전 [협의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전계획을 수립]	■ 생태환경이 양호한 지역 보전을 위한 계획구간 설정



1.4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1.4.1 평가항목의 선정

- 평가항목의 선정은 「환경부 고시 제2023-72호」(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본 계획의 특성과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항목으로 선정하였으며, 사업 특성상 해당이 없거나 영향이 미미한 항목은 제외함.

<표 1.4.1 - 1> 평가항목 선정안

평가항목		항목	선정(중점, 일반)/제외	선정(제외) 사유	
계획의 적정성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	■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 및 분석	
	대안 설정·분석의 적정성		－	■ 계획비교, 수단방법, 수요공급, 입지 및 기타 등의 대안 분석 실시	
입지의 타당성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서식지보전	동·식물상	중점	■ 계획시행으로 인한 동·식물의 영향 및 변화
			자연환경자산	일반	■ 계획시행으로 인한 자연환경자산의 영향 및 변화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지형·지질	중점	■ 계획시행에 따른 절·성토로 인한 지형변화 ■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에 미치는 영향
			주변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위 락	제외
		경 관		중점	■ 계획기간 및 주변지역의 경관요소 파악 ■ 개발계획 수립에 따른 경관변화
		수환경의 보전	수 질	중점	■ 계획시행에 따른 하천수질 영향
			수리·수문	제외	■ 계획특성상 수리·수문 요인 없음
			해양환경	일반	■ 계획시행으로 인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기 상	일반	■ 대기질 예측시 기초자료로 활용
			대기질	중점	■ 대기오염도 현황 ■ 장래 개별 개발사업시 대기질에 영향 발생 여부
			악 취	제외	■ 계획시행과 연관 없음
			온실가스	일반	■ 계획시행으로 인한 온실가스 발생 및 변화
			토 양	일반	■ 장래 개별 개발사업시 토양에 영향 발생 여부
			소음·진동	중점	■ 장래 개별 개발사업시 소음·진동에 영향 발생 여부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일반	■ 계획 시행 전·후 주변 환경기초시설 적정 검토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친환경적 자원순환	일반	■ 장래 개별 개발사업시 폐기물의 영향 발생 여부
	사회 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중점	■ 계획시행으로 인한 토지이용 변화 검토
			위생공중보건	제외	■ 환경보건법 시행령 [별표1]에 의거 건강영향 항목의 평가 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전과장해	제외	■ 계획수립에 따른 영향이 없거나 미미함.
			일조장해	제외	■ 계획수립에 따른 영향이 없거나 미미함.
			인 구	일반	■ 계획시행으로 인한 인구 변화
			주 거	제외	■ 계획수립에 따른 영향이 없거나 미미함.
			산 업	제외	■ 계획수립에 따른 영향이 없거나 미미함.



1.4.2 평가범위 및 방법 설정

- 환경영향의 평가범위, 예측·분석에 사용된 기법, 내용, 관련 자료 등을 명시하고, 사용근거 등 그 타당성을 가능한 객관적으로 제시할 계획임.
- 조사는 원칙적으로 기존자료를 활용하고, 필요시 현지조사 및 탐문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자료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며, 기존자료는 최신자료를 사용
- 예측은 보전대상 등 조사시 파악된 계획구간의 환경현황을 바탕으로 본 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환경보전대상이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하여 예측
- 영향예측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방안 수립

<표 1.4.2 - 1> 항목별 조사·예측 방법

평가항목		현황조사	예측방법
입지의 타당성			
가)자연환경의보전	(1)생물다양성·서식지보전(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①조사내용 ■자연현황(식생현황, 수변·습지 등의 분포, 보전하여야 할 동·식물, 동·식물의 서식환경 등) ②조사범위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기존자료조사, 전국자연환경조사 및 광양시 및 일대에 실시한 겨울철 조류 동시 센서스를 조사지점에 따라 문헌자료로 인용	■보전하여야 할 동·식물 및 그 서식환경을 파악하여 이들 보호대상이 계획수립으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과 범위를 종합적으로 예측
	(2)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지형·지질)	①조사내용 ■지형형상, 지질상황, 특이지형 등 ②조사범위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기존 문헌자료 참고	■계획수립에 따른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영향예측
	(3)주변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경관)	①조사내용 ■경관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 ②조사범위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③ 조사방법 ■현지·문헌조사 및 통계자료 조사·분석	■계획노선의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여부 검토

<표 1.4.2 - 1> 계속



평 가 항 목		현황조사		예측방법
입지의 타당성				
가)자연환경의보전	(4)수환경의보전	수 질	①조사내용 ■하류수계에 대한 환경기준항목의 현황 농도 ②조사범위 ■계획대상지 및 하류수계 ③조사방법 ■문헌조사 분석·정리	■장래 개별 개발사업시 토사유출에 의한 수용수계에 미치는 영향 예측
		해양환경	①조사내용 ■해양보호구역 현황, 환경관리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현황 ②조사범위 ■계획대상지 하류 해양지역 ③조사방법 ■문헌조사 분석·정리	■장래 개별 개발사업시 토사유출에 의한 주변 해역에 미치는 영향 예측
나)생활환경의안정성	(1)환경기준부합성	기 상	①조사내용 ■기온, 강수량, 상대습도, 풍향, 강수일수, 일조시간 등 기상현황 ②조사범위 ■광양시 ③조사방법 ■기상관측소의 10년간 기상자료 이용 ■타 항목의 기초자료로 이용	—
		대기질	①조사내용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의 대기오염도, 오염물질 배출계수를 이용한 배출량 산정 ②조사범위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기존자료 및 문헌조사 실시	■계획구간 및 주변지역의 대기오염도 등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장래 개별 개발사업시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
		토 양	①조사내용 ■계획구간의 토양오염 조사 ②조사범위 ■계획대상지 내 ③조사방법 ■기존자료 및 문헌조사 실시	■장래 개별 개발사업시 발생하는 토양오염에 대한 처리방안 강구



<표 1.4.2 - 1> 계속

평가항목			현황조사	예측방법
입지의 타당성				
나) 생활환경의 안정성	(1) 환경기 준 부 합 성	소 음 · 진 동	①조사내용 ■소음의 상황 및 주요 발생원 조사 ②조사범위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기존자료 및 문헌조사 실시	■장래 개별 개발사업시 공사시 및 운영시 소음·진동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소음·진동 예측모델을 이용하여 예측 실시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①조사내용 ■하수종말처리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과 같은 환경기초시설현황 ②조사범위 ■광양시 ③조사방법 ■기존자료 및 통계자료 조사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으로 환경기초시설에 미치는 영향 예측
	(3) 자원 에너지 순환의 효율성(친환경적 자원순환)		①조사내용 ■폐기물, 분뇨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 ②조사범위 ■광양시 ③조사방법 ■기존자료 및 통계자료 조사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방안 강구
다)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1)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토지이용	①조사내용 ■토지이용현황 ②조사범위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기존 문헌자료 및 현지조사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 전·후에 따른 토지이용 변화 분석 ■기존 문헌 및 유사사례 조사
		인 구	①조사내용 ■인구현황 ②조사범위 ■계획대상지 및 주변지역 ③조사방법 ■기존 문헌자료 조사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 전·후에 따른 인구 변화 분석 ■기존 문헌 및 유사사례 조사



1.5 환경에 미칠 주요 영향 및 환경보전대책

평가항목			영향예측	환경보전대책
자연 환경의 보전	생물다양성· 서식지보전	동·식물상	■ 공사시 불가피한 식생 훼손에 의한 영향 예상 ■ 환경부 지정 법정보호종에 미치는 영향 요인 분석 및 변화 예상	■ 동·식물상에 미치는 영향 및 저감방안 ■ 기존 식생훼손의 최소화
	지형 및 생태축의 보전		■ 지형·지질의 전반적인 특성과악 ■ 공사시 토사유출에 의한 영향이 예상	■ 지형의 훼손정도 및 대책 ■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 훼손 최소화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사업시행으로 인한 경관 변화 예상	■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및 경관계획 수립
	수환경의 보전		■ 공사시 주변수계 및 해양 토사유출 및 공사인부 투입에 따른 오수발생이 예상 ■ 운영시 비점오염물질 등에 의한 주변 수계 및 해양 영향이 예상	■ 공사시 가배수로, 임시침사지, 오탁방지막 설치 ■ 현장사무소 내 이동식 간이화장실 설치 ■ 운영시 비점오염물질 저감계획 수립
생활 환경의 안정성	환경기준 부합성	대기질	■ 공사시 투입장비에 따른 비산먼지에 의한 영향이 예상	■ 차량 및 공사장비의 적정 분산 투입 ■ 주기적인 살수 실시
		온실가스	■ 공사시 및 운영시 온실가스 발생	■ 공사시 노후 건설장비 사용 및 공회전 제한 등 에너지 사용량 저감 ■ 운영시 신재생에너지 사용, 사면녹화를 통한 온실가스 흡수량 확보
		토 양	■ 공사시 공사장비, 인부 등에 의한 토양오염 발생	■ 공사장비에 의한 폐오일 및 폐유는 지정된 장소에서 교환 ■ 공사인부에 의해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 철저히 관리
		소음·진동	■ 공사시 공사차량 및 소음·진동에 의한 영향이 예상 ■ 운영시 교통소음에 의한 소음 영향이 예상	■ 공사시 투입장비 최소화, 저소음, 저진동 장비 사용, 주간작업 실시 ■ 운영시 차량 속도제한, 방음벽 설치 계획 수립
	자원·에너지순환의 효율성		■ 공사시 생활폐기물 및 분뇨, 폐유 등의 발생이 예상	■ 계획시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 적정처리 여부 검토
사회 경제 환경 과의 조화성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 사업계획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변화가 예상	■ 편입토지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거 보상 후 공사 시행



1.6 대안

1.6.1 대안의 종류 및 선정방법

- 본 계획에 대한 대안은 「환경영향평가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3-72호)」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2023.02, 환경부)」에 제시된 대안의 종류와 선정방법을 적용하였으며, 대안의 종류는 다음과 같음.
- 대안은 행정계획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복수의 대안 종류를 선정하여 대안 검토를 실시하고 환경적 측면, 안정적 측면, 경제적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장 합리적인 대안을 설정하고자 함.
- 대안 선정방법
 - 대안이란 환경적 목표와 기준 유지를 전제로 행정계획의 목표와 방향, 추진전략과 방법, 수요와 공급, 위치와 시기, 공법 등에 대한 여러 가지 조건을 변경한 결과를 말함.
 - 대안의 선정은 계획을 목적 또는 목표, 계획의 성격, 계획의 내용, 지역적·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적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함.
 - 한편, 본 계획특성상 “계획비교”, “수단·방법”, “시기·순서”에 대한 대안종류를 선정하였음.

<표 1.6.1 - 1> 대안의 종류 및 선정

대안종류	대안 선정방법	선정유무
계획비교	■ 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을 경우 발생 가능한 상황(No Action)과 계획을 수립했을 때 발생 가능한 상황을 대안으로 선정	○
입 지	■ 공간구상 및 전략, 입지, 토지이용계획 등에 대한 대안설정 ■ 입지에 따른 환경영향을 고려한 개발 가용지 설정과 관련된 대안 설정	-
수단·방법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대안으로 선정	○
수요·공급	■ 개발에 관한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수요·공급량(규모)에 대한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시기·순서	■ 개발시기 및 순서를 결정하는 계획의 경우 시행 시기 및 진행 순서(예 : 연차별 개발) 등의 조건을 변경하여 대안으로 선정	○
기 타	■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 또는 기타 관계행정 기관의 장기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대안	-



1.6.2 계획비교 대안의 평가

- 대안은 계획비교 측면에서 계획 수립(Action) 및 계획 미수립(No Action)에 따른 대안별 환경적인 비교·분석을 실시함.

<표 1.6.2 - 1> 계획비교 대안의 평가

구 분	대안 1(Action)	대안 2(No Action)
기본방향	■ 계획수립시	■ 계획 미수립시
환경기준	■ 계획수립으로 인하여 각종 생활환경(대기질, 수질, 소음 등)의 영향이 예상됨. ■ 오염원별 저감대책 강구·시행시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 계획 미수립으로 지역 환경기준에 미칠 영향 없음.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	■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에 따라 계획된 입지에 대한 공사 시행시 일부 생태계 훼손이 예상되나, 이는 일시적일 것으로 예상됨. ■ 계획수립시 시설지구 외 편입 임야의 원형보전을 계획하여 자연 생태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 계획 미수립에 따른 직접적인 자연환경 변화는 없음.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 계획수립으로 인한 자연경관의 변화가 다소 예상되나, 적정개발계획의 수립 등을 통하여 주변경관과 조화되도록 사업을 시행.	■ 계획 미수립에 따른 직접적인 자연경관 영향은 없음.
지형의 훼손에 미치는 영향	■ 관련법 및 지형현황 분석을 통해 지형변화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노선계획 수립.	■ 계획 미수립에 따른 직접적인 지형훼손에 미치는 영향은 없음.
환경친화적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 환경 및 생태적 보전을 위한 노선계획을 수립. ■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에 따른 토지이용상의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됨.	■ 계획을 미 수립할 경우 무분별하고 비효율적인 토지이용으로 토지의 효율성 저하.
선정사유	■ 금회 계획수립을 통해 광양시의 효율적인 농어촌도로 운영·관리가 가능한 대안1을 선정하였음.	
선정안	●	—



1.6.3 수단·방법

- 광양시 개발계획과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계획수립 대안1과 광양시 개발계획에 따른 계획수립 대안2를 비교·검토하였음.

<표 1.6.3 - 1> 수단·방법에 대한 평가

구 분	대안 1 (광양시 개발계획과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 반영)	대안 2 (광양시 개발계획에 따른 계획수립)
개 요	■ 광양시 내 개발계획에 따른 위계조정, 노선조정, 노선폐지 ■ 계획노선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수렴 ■ 읍·면별 지역주민 의견수렴	■ 광양시 내 개발계획에 따른 위계조정, 노선조정, 노선폐지
장 점	■ 주민공람 및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으로 관련 민원 최소화 ■ 계획노선을 관리하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어촌 지역의 발전추세에 맞춰 도로망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농어촌도로 취지에 부합한 농어촌 거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도로 정비	■ 현황도로 반영 및 광양시 내 변경계획에 따른 도로 노선계획으로 계획수립 기간 단축 ■ 현황조사를 통해 환경민감지역 노선폐지, 우회 및 도로 선형 변경
단 점	■ 주민 및 관계기관 의견에 대한 반영으로 노선 및 구간선정 계획기간 장기간 소요	■ 주민의견 미수렴으로 인한 다수의 민원 발생 ■ 농어촌도로 미개설로 인한 도로망 단절에 따른 낙후지역 발생 우려
선정사유	■ 금회 계획노선인 농어촌도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농어촌 거주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을 증대하고, 농어촌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로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광양시 개발계획과 주민 및 관계기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대안 1을 선정하였음.	
선정안	●	—



1.6.4 시가·순서

- 농어촌도로 기본계획 수립 후 단위구간별 단계별 시행(1)안과 일괄 시행(2)안을 대안으로 비교 검토하였음.

<표 1.6.4 - 1> 시가·순서에 대한 평가

구 분	대안 1 (단계별 시행)	대안 2 (일괄 시행)
기본방향	■ 도로별 단계적 시행	■ 일괄적 시행
개 요	■ 기본계획 수립 후 농어촌도로 실시설계시 도로별 단계적인 공사계획 및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순차적으로 공사를 시행	■ 본 계획 수립후 농어촌도로 실시설계시 도로별 단계적인 구분 없이 전체 도로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공사를 시행
장 점	■ 계획도로 주변 개발계획 및 주민 민원을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시행 가능 ■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방지 ■ 효율적인 토지이용계획 수립	■ 사업기간 및 공사기간 단축으로 효율적인 도로 운영·관리 가능
단 점	■ 계획노선별 개발계획 수립으로 공사시기가 서로 상이하고, 공사기간 과다 발생	■ 계획노선 동시다발적인 공사로 인한 무분별한 자연훼손 및 야생생물의 서식·휴식처에 대한 간섭·교란 등의 발생 ■ 공사기간 내 도로차단 등으로 인한 교통흐름 장애 발생
선정사유	■ 도로별 단계적인 공사 및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분별한 자연훼손을 줄이고, 공사구간내 야생생물의 서식·휴식처에 대한 교란발생 등에 대한 대처가 가능하고, 계획노선 주변 개발계획 및 주민민원을 적극 반영할 수 있는 대안1(단계별 시행)을 선정하였음.	
선정안	●	—



1.7 결론

- 본 계획은 기 수립된 광양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의 성과를 분석하고, 기존 미집행 계획의 지속적인 추진여부와 변경여부 등을 검토하여 광양시 여건에 적합하고 실현 가능한 농어촌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 기수립 계획에 따라 지정된 도로, 미 개설된 도로 및 농촌의 발전추세를 고려한 도로의 위계조정, 노선조정, 폐지 등 농어촌지역 주민의 농수산물의 생산·유통을 향상시켜 경제 활성화를 통한 농촌지역발전과 교통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마을·농경지간 접근성 제고 등 지역 간 효율적인 도로교통 처리 대책을 수립하였음.
- 광양시 개발계획과 교통수요 등을 고려한 체계적인 도로망 계획수립으로 농어촌 주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반면, 향후 세부 개발계획에 따른 계획노선 인접지역의 부정적인 환경상의 영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대상지역별 환경적 검토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향후 실시설계에 따른 공사시 면밀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